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여름호

■ 목차

I. 테마진단

-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외부기고: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 1
-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 (강성호, 이상우) / 16

II. 글로벌 이슈와 뉴스

- 1. 규제 및 감독 / 36
 - 유럽 보험산업의 솔벤시 2 시행 준비 현황과 시사점 (전용식)
 - 경추손상 문제로 인한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의 적자 및 대책 (이정환)
- 2. 경영전략 / 52
 - 자동차보험산업의 위기감과 요율인상: 일본의 사례 (최 원)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 (장동식)
- 3. 글로벌 경제 / 68
 - 중국 경제 경착륙에 관한 중국 국내외의 평가 (이소양)

III.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채원영) / 74
-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 80
 - 미국 동향 (이아름)
 - 영국 동향 (이정환)
 - 일본 동향 (장동식)
 - 중국 동향 (이소양)

I. 테마진단

◆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외부기고: 박해식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1. 문제의 제기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개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연준(FRB)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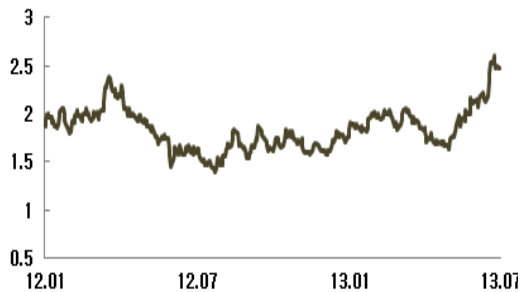
- 지난 6월 19일 버냉키 FRB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間に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크게 동요함.
- 6월 1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직후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금년 말부터 FRB의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내년 중반부터 자산 매입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6월 FOMC회의의 발언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7월 12일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지속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시 회복됨.
 - 7월 12일 전미경제연구소(NBER) 행사에서 버냉키 의장은 당분간 상당한 수준의 경기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금리를 자동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의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긍정적 영향도 불러올 수 있음.

-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대폭 축소되면 글로벌 자금경색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실물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글로벌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미국의 출구전략은 고용시장 및 경제성장세의 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그림 1〉 미국 국채수익률(10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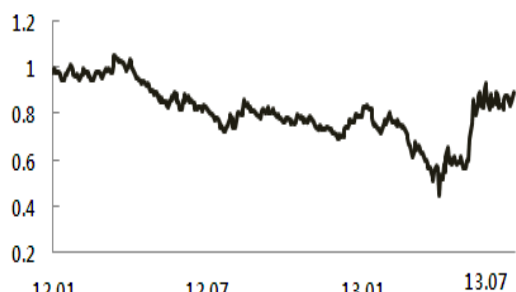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loomberg.

〈그림 2〉 일본 국채수익률(10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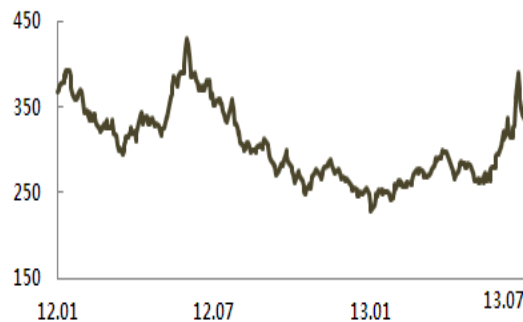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loomberg.

〈그림 3〉 신흥국 채권지수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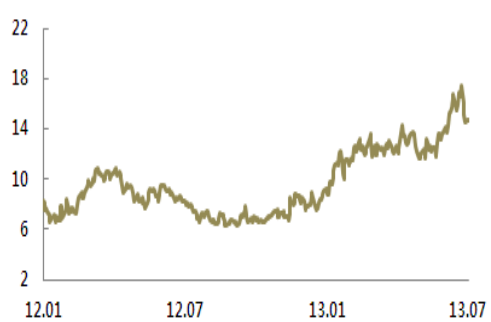
(단위: bp)



자료: Bloomberg.

〈그림 4〉 엔/달러 내재변동성(1개월물)

(단위: %)



자료: Bloomberg.

■ 미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말 아베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전개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아베노믹스에서 일본 중앙은행(BOJ)은 과거에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 중임.
- 아베노믹스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롭게 창출될 엔화자금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사라지게 될 미 달러화 자금을 대체할 수 있으면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자산버블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하여 중도에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본고에서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함.

2. 미국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의 주요내용¹⁾

미 연준의 본원통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로 2조 7,00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일본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도 작년 말 아베정권 출범 이후 추진 중인 대규모 양적완화로 2014년에 미 연준의 본원통화 규모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 미국의 양적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RB는 2008년 12월 기준금리(FFR)를 0~0.25%로 인하하여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총 3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함.

1) 본장의 내용은 박해식·임진(2013), 박성욱(2013)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된 1차 양적완화(QE1)에서 3,000억 달러의 국채, 1조 2,500억 달러의 모기지담보증권(MBS) 및 2,000억 달러의 공공기관채를 매입함.

- 특히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3대 공공기관채(Freddie Mac, Fannie Mae, Ginnie Mae)와 MBS를 매입함.

〈표 1〉 미국 양적완화의 주요내용

발표시기	규모 및 내용	매입대상	기간	기준금리
2008년 12월 (QE1)	국채 3,000억 달러, MBS 1조 4,500억 달러	MBS, 장기국채	2008.12 ~ 2010.3	1%에서 0~0.25%로 인하
2010년 11월 (QE2)	국채 6,000억 달러, 만기도래 채권 재투자, 4,000억 달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국채	2010.11 ~ 2011.6	2014년 말까지 0~0.25% 유지
2012년 9월 (QE3)	월 400억 달러, 2,670억 달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추가(2012년 말까지)	MBS	2012.9 ~ 무제한 (open-ended)	2015년 중순까지 0~0.25% 유지
2012년 12월 (QE3 추가)	월 450억 달러	장기국채	2013.1 ~ 무제한 (open-ended)	실업률 6.5% 상회, 인플레이션 2.5%를 넘지 않는 한 양적완화 정책 유지

■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행된 2차 양적완화(QE2)에서는 매월 750억 달러씩 총 6,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함.

- QE2 종료 이후에도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만기 3년 미만의 국채를 매도하고 6~30년 만기의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시행함(4,000억 달러).
- 또한 2012년 6월~2012년 말에는 2,67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추가적으로 시행함.

■ 2차례의 양적완화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경기회복의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3차 양적완화(QE3)를 실시함.

- 2012년 9월 주택시장 활성화 및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무제한적으로(open-ended)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발표함.
- 기준금리 목표수준(0~0.25%)의 유지기간을 종전의 '2014년 후반까지'에서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at least through mid-2015)'로 연장함.

■ 2012년 12월에는 동년 말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함.

- 2012년 9월부터 시행되었던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도 지속하여 2013년부터 국채 매입규모를 매월 총 850억 달러로 확대함.
- 실업률이 6.5%를 상회하고 향후 1~2년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5%를 넘지 않는 한 0~0.25%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 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본정부는 20년에 걸쳐 진행된 디플레이션 타개를 목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시행 중임.

- 아베노믹스는 ① 질적·양적 금융완화(Q2E) ② 확장적 재정정책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세 가지 정책조합('three arrows')으로 구성됨.
- 질적·양적 금융완화는 지난 4월 4일 BOJ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시행 중임.
-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GDP의 약 1.5%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10조 3,000억 엔)을 2013~2014 회계연도에 집행할 계획임.
- 지난 6월 5일 향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150만엔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발표

■ 특히 BOJ는 향후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적·양적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함.

- (본원통화목표제 도입) BOJ의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익일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의 연간 60~70조 엔 증액을 통해 2014년에 270조 엔(GDP의 약 55%)으로 확대함.
- (자산매입 확대) 국채를 중심으로 매월 7조 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고 기존의 자산매입한도를 폐지함.
- (국채의 잔존만기 장기화) 10년 만기 장기국채 매입 확대를 통해 BOJ 보유 국채의 평

균 잔존만기를 기존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수익률곡선(yield curve)의 하향조정을 유도함.²⁾

- (민간자산 보유 확대) ETFs, REITs, CP, 회사채 등 민간자산의 매입을 확대하여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함.

〈표 2〉 BOJ의 본원통화 기준 목표와 대차대조표 전망

(단위: 조 엔)

구분		2012년말(실적)	2013년말(전망)	2014년말(전망)
본원통화		138	200	270
(대차대조표항목 내역)				
	장기국채	89	140	190
	CP 등	2.1	2.2	2.2
	사채 등	2.9	3.2	3.2
	ETF	1.5	2.5	3.5
	REIT	0.11	0.14	0.17
	대출지원기금	3.3	13	18
기타 자산계		158	220	290
	은행권	87	88	90
	당좌예금	47	107	175
기타 부채·자산계		158	220	290

자료: 한국은행.

■ 아베노믹스에서 시행 중인 BOJ의 금융완화정책은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됨.

- 지난 5년간(2008~2012년) BOJ의 본원통화 증가율은 약 45%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2년 안에 본원통화를 약 96% 증액할 계획임.
- BOJ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6년간(2001~2006년) 양적완화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본원통화는 약 70% 정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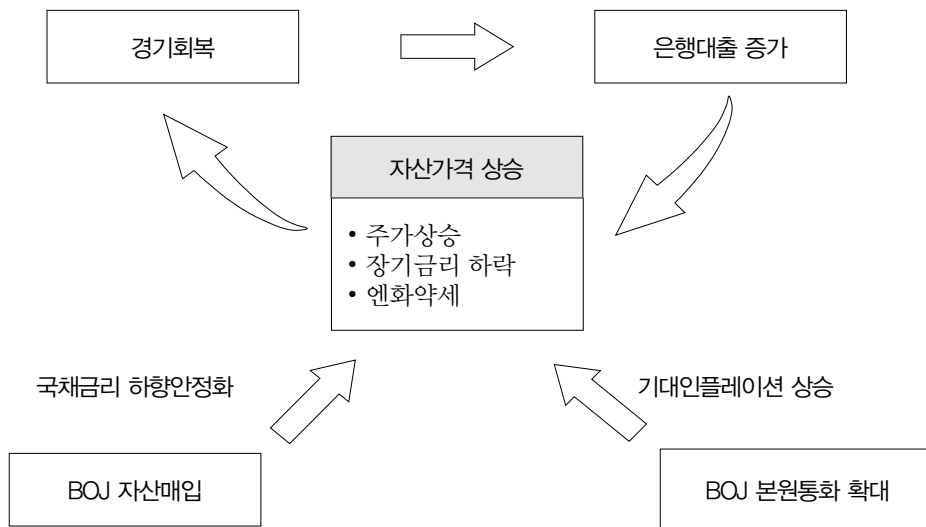
■ 일본정부는 BOJ의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자산가격 상승→경기회복→은행대출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기대함.

- BOJ의 본원통화 확대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자산매입에 따른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는 자산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

2) 미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10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자산가격 상승은 富의 효과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진작을 가속화함.
- BOJ의 금융완화에 따른 엔화약세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함.

〈그림 5〉 아베노믹스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3. 글로벌 유동성 측면의 보완적 관계 검토

일본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되나,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출구전략 시행 시 유동성 채널이 작동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임.

○ FRB의 본원통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위기 이

후 세 차례의 양적완화로 크게 확대되어 작년 말 현재 2조 7,000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통화승수 10을 가정하면 위기 이후 17조 달러가 넘는 미 달러화 자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로 공급되었음을 의미함.
- 자금경색이 심각하였던 2009년의 통화승수 4를 가정하더라도 6조 8,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 달러화 신용이 시중에 창출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양적완화로 창출된 미 달러화 자금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전세계적 캐리거래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자금공급원이 되었던 엔화자금(최소 6,000억~최대 5조 달러)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임.

〈표 3〉 신흥국의 자본유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배)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	2013 ^{e)}	2014 ^{e)}
자본계정에 의한 자본유입	940	656	715	1,182	1,145	1,113	1,173	1,209
민간자금	929	594	644	1,108	1,084	1,080	1,118	1,150
지분투자자금	296	422	490	606	528	572	616	646
직접투자자금	304	509	357	461	524	499	517	536
포트폴리오투자자금	△8	△86	133	145	4	73	99	110
신용공여	632	172	154	503	556	508	502	504
상업은행	410	29	△10	156	177	143	152	175
비은행	222	143	164	347	379	365	351	329
공공자금	11	62	71	72	61	33	55	59
경상계정에 의한 자본유입 (경상수지 흑자)	434	591	358	356	300	314	217	150
자본계정유입/경상계정 유입배율	2.2	1.1	2.0	3.3	3.8	3.5	5.4	8.1

주: 30개국은 신흥 유럽 8개국(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신흥 아시아 7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중남미 8개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중동 7개국(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UAE, 레바논, 모로코)을 가리킴.

자료: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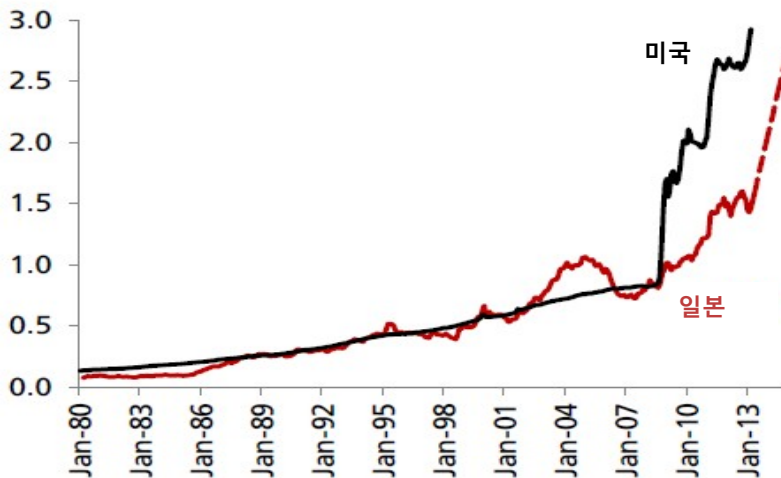
■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엄청난 규모의 미 달러화 자금이 시중에서 사라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위기 이후 대규모 자본유입을 경험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입으로 2010년 이후 신흥국의 자본 유입 규모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함.
- 위기 이후 규제강화와 디레버리징으로 은행의 신용공여 규모가 줄어든 반면,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의 신용공여가 늘어나고 직간접 지분투자도 확대됨.
- 최근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유입의 증가는 미국의 출구전략 실행 시 위험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음.

〈그림 6〉 BOJ와 FRB의 본원통화 비교

(단위: 조 달러)



자료: DBS.

■ 규모면에서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추진 중인 양적완화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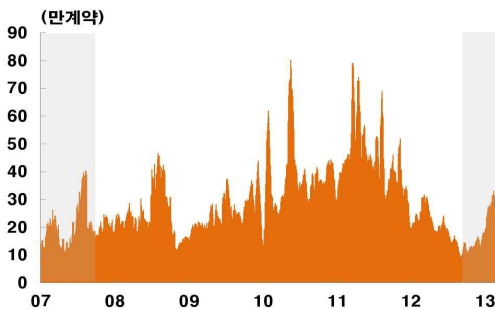
- BOJ의 양적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RB의 양적완화에 견줄 만큼 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됨.
- 앞서 언급하였듯이 FRB의 본원통화는 2012년 말 현재 약 2조 7,000억 달러로 2008년에 비해 세배 증가하였는데, BOJ의 본원통화도 2014년 말에 약 2조 7,000억 달러(미 달러 당 100엔으로 추산)에 이를 것으로 예정됨.

-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증발하게 될 미 달러화 자금(통화승수 10 가정 시 17조 달러)의 상당부분을 엔화자금(달러당 100엔, 통화승수 10 가정 시 13조 달러)이 대체 가능함.

■ 이처럼 일본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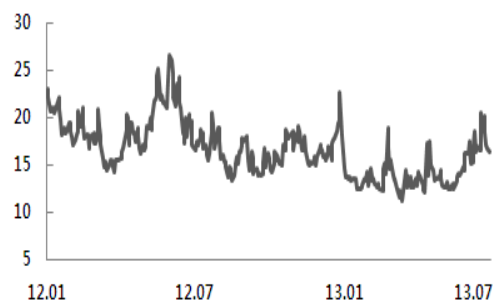
-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는 엔화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미 달러화 유동성을 대체할 수 있을 때 작동하나,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준비자산 통화, 결제통화 등으로서 엔화의 역할이 미 달러화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미 달러화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
- 둘째, 양적완화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미진한 상태에서 자산버블과 같은 부작용만 심화되어 엔화자금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만 머물거나 아베노믹스 자체가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엔캐리거래 등을 통한 엔화자금의 해외유출이 크게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그림 7〉과 〈그림 8〉 참조).

〈그림 7〉 일본의 FX 마진거래



주: 엔화 순매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VI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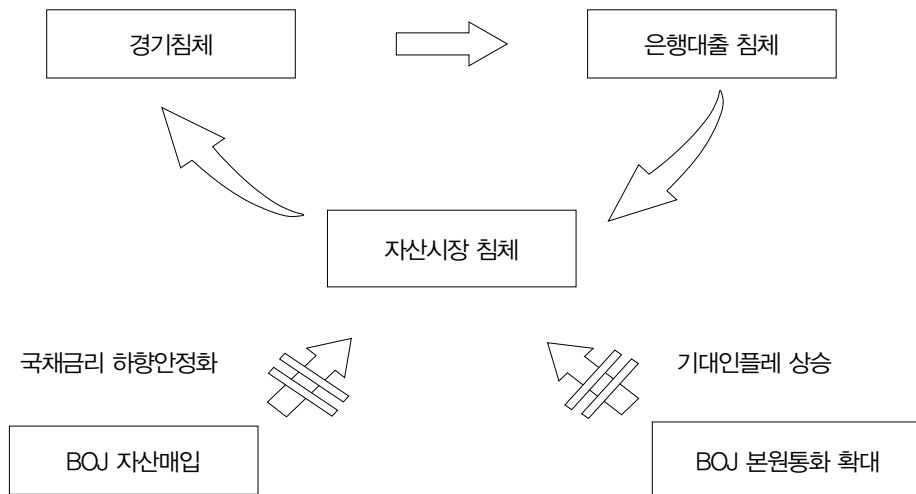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특히 아베노믹스는 BOJ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우세함.³⁾

- BOJ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는 ① 금융완화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② 시중자금이 금융권에만 머물고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미작동함.
- 전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금융시장 침체→경기 침체→은행대출 침체의 악순환구조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이 연장됨.
- 후자의 경우는 실물경제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거품만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됨.

〈그림 9〉 아베노믹스의 실패사례



■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BOJ의 금융완화정책만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어렵다는 지적임.

- 시간제 취업자의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임금하락은 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자주 거론됨.
- 일본 고용시장에서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육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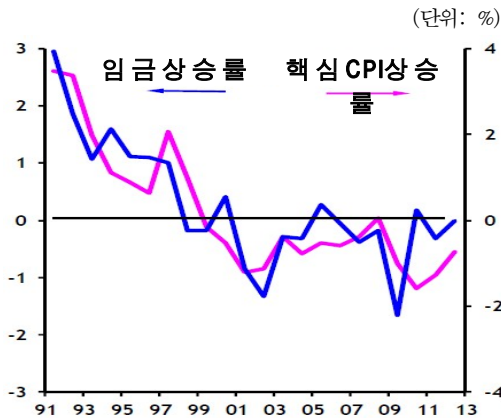
3) Ma(2013), Kanno(2013) 참조.

-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둔화됨.

■ 민간부문의 채무조정(deleveraging), 인구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BOJ의 국채매입을 통한 금리 하향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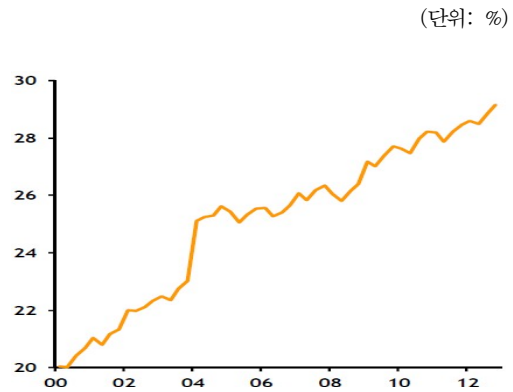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부채 유지를 위해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 또한 내국인이 국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민간부문 저축률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채금리 상승압력이 가중됨.⁴⁾
-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채보유가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글로벌 자금시장 등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리에 대한 BOJ의 영향력이 축소됨.

〈그림 10〉 임금과 물가



자료: J.P. Morgan.

〈그림 11〉 시간제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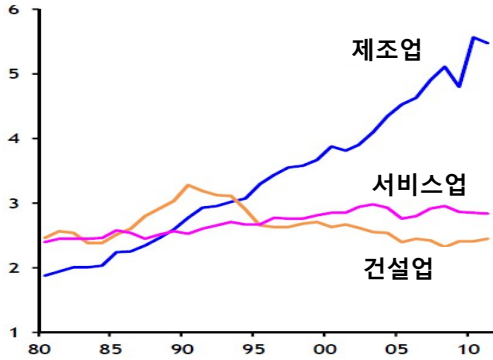


주: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자료: J.P. Morgan.

4) 일본 총저축률은 1980~1990년대에 30%, 2000년대에 25%, 2010년에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림 12〉 업종별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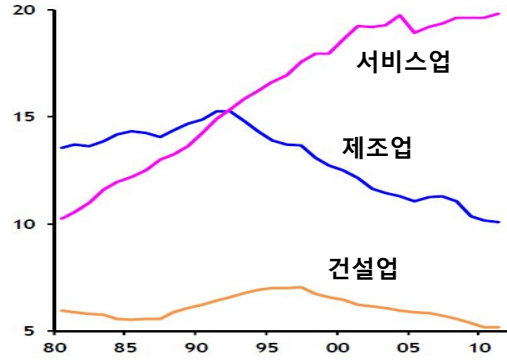
(단위: 시간당 천 엔)



자료: J.P. Morgan.

〈그림 13〉 업종별 취업자

(단위: 백만 명)



자료: J.P. Morgan.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함.

- BOJ 금융완화정책의 기대인플레이 또는 금리 하향안정화 채널이 작동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BOJ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물경제 회복을 동반하지 못하여 자산시장 거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제시가 기대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임.⁵⁾

4.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공급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글로벌 자금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지난 6월 5일 아베정부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함.

■ 일본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되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 글로벌 자금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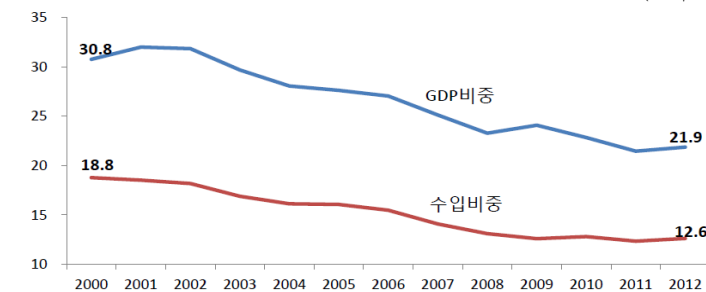
-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자금공급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 글로벌 금융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전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8%에서 2012년 21.9%로 줄어들었으며, 미국의 수입이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8.8%에서 2012년 12.6%로 감소함.
- 이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미국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함.

■ 급격한 자본유출 등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자금경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 글로벌 자금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함.
-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등 기존 자본유출입 규제 장치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자본유출입 경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함.
-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외환보유액 이외의 추가적인 외화자금 공급원 확보에 주력함.

〈그림 14〉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

(단위: %)



자료: 박성욱(2013)

〈참 고 문 헌〉

박성욱(2013), 「미 양적완화 축소 전망 및 영향 분석」, 미발간자료,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임진(2013),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미발간자료, 한국금융연구원.

Kanno, Masaaki(2013), “Abe told us, ‘Deflation is advantage’”,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Ma, Tieying(2013), “Abenomics: One Achievement, Three Challenges”, DBS Group Research.

◆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

1. 검토 배경 및 분석내용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시장의 환경 변화를 의미함.

- 기초연금 도입 논의는 이미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점인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2012년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음.
- 기초연금 도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이나 노인세대에 대한 임의적·한시적 복지(부조)가 아니라 기본적·항구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의미함.

■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사각지대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불안정, 후세대부담, 사적연금 시장 위축이라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대선 공약,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쟁은 재정불안정과 후세대부담 문제 때문이었음.
- 기초연금 제공은 노후필요자금에 대한 공적기능 강화를 의미하므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저해, 사적저축 감소 등 금융시장 교란의 우려가 존재함.

■ 최근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사간 협조적 역할 배분을 모색하고 있음.

- 영국은 공적연금 정액화에 따른 감소된 연금급여수준을 NEST 등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고,
- 독일은 리스터 연금, 스웨덴은 프리미엄 연금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시장 환경 변화(공적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적연금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현행 공적연금의 개혁과 핵심적 변화로 등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 후 최근 정부·위원회의 기초연금안을 평가함.
-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현상이 선진국의 연금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나아가 기초연금제도 도입 및 급속한 고령화의 위기가 사적연금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정책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과정과 기초연금 도입 의의

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도입, 문제, 개혁과정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력 향상은 국민연금 도입 여건을 성숙시켰고 도입된 지 11년 만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함.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노인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경제력 향상 등 국민 부담능력¹⁾ 제고로 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됨.
-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99년 전국민연금시대를 개막함.
 - 1974년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석유파동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시행 보류되었으나, 1988년 국민연금법으로 시행하게 됨.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실시됨에 따라 제도도입 10년 만에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됨.
 - 짧은 시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적용으로 외연적 발전은 가져왔으나 수급불균형, 재정불안정 등 내실화의 문제를 안게 됨.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수급구조 불균형, 장기재정 불안정성 등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1) 동 기간 국제수지 흑자, 물가안정, 경기호황 등으로 1인당 GNP 2천 달러가 초과됨.

-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가족구조 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7%) → 2017년 고령사회(14.3%) → 2026년 초고령사회(20.8%)로 이행기간이 최단기이고,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7.4%로 전망²⁾됨.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들에 대해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22%에서 2020년대 2.90%, 2030년대 1.56%, 2040년대 0.93%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³⁾
 - 핵가족화 심화, 이혼율 증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자녀부양에 의한 전통적 노후보장은 약화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수급구조 불균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 모든 소득계층·세대에 대해 수익비(부담 대비 급여)가 1이 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을 내재함(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약 2수준).
-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중 하나인 세대간 재분배는 후세대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제도 유지 시 2044년 수지적자, 2060년 기금소진이 전망됨.⁴⁾
 -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운영(완전부과방식)할 경우 필요 보험료를 수준은 2060년경에는 21.4% 수준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 시행당시 가입할 수 없었던 현 노령계층의 빈곤문제와 지역가입자의 낮은 제도 수용성(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문제)으로 인해 고령 빈곤문제가 존재함.
 -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미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세대 노인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⁵⁾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

2) 고령화사회: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3) 국회예산정책처(2012. 6),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4)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보건복지부(2013. 3), 제3차 장기재정전망 결과 설명자료.

5) 현재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즉, 한국 45.1%, 일본 22.0%, 프랑스 8.8%, 영국 10.3%, 미국 23.6%(OECD평균 13.3%)로 조사되고 있음(OECD

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제도 적용대상자 중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문제로 인해 연금사각지대 발생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999년, 2007년 두 차례의 재정안정화 중심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문제와 노후소득보장 수준 및 연금사각지대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존재함.

○ 세계화의 영향⁶⁾(재정안정화 중심의 제도 개혁)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1차 연금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함.

- 학계 · 연구기관 · 사회단체 ·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기획단 최종안에 대해서도 여론과 정부(복지부)의 이견, 시민단체나 노조 반발 등으로 개혁과정이 순조롭지 못함.
- 급여수준 하향조정(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삭감),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올려 65세로 조정), 재정계산제도를 도입(2003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개혁과정을 통해 재정불안정을 일정수준 완화하는 재정효과를 달성함(수지적자 2020년대 → 2036년대, 기금소진시점 2030년대 → 2047년).

○ 1999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는 지속되었고 제1차 재정계산제도 실시(2003년) 후 마련한 제도개선안 또한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금급여수준 보장 및 연금사각지대 개선이 요구됨.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70%에게 급여수준을 5%에서 장기적으로 10%(2028년)로 인상)을 도입함(2007년 4월).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로의 개혁에 초점을 둔 제2차 개혁⁷⁾을 단행하게 됨(보험료 인상 유보, 급여수준만 40%로 축소, 2007년 7월).

○ 두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도 재정문제와 노후보장 급

2008).

6) 1970년 초부터 경제 불황, 인구 고령화로 재정안정화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1990년대 초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연금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을 단행함.

7) 국민연금 재정효과는 당기 수지적자년도가 2044년, 기금소진년도가 2060년으로 추정됨.

여수준 및 연금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지 못함.

- 2012년 말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재정안정보다는 사각지대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것이 이슈화되었으나, 인수위 및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함.
- 재정안정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3차 재정계산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 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정책적으로 수용될 지는 미지수임.

나. 2013년 인수위 기초연금(안) 내용 및 의의(평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나, 충분한 연금을 확보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65세 이상 인구의 5.8%).

■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으로 하며,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수급여부에 따라 각각 10만 원, 4만 원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A값⁸⁾ 상승률에 기초하여 인상하도록 설계됨.

〈표 1〉 인수위 기초연금 기본액(단신기준)²⁾

구분	하위 70%		상위 30%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A값 대비 ¹⁾	10%		5%	2%
금액 기준	20만 원		10만 원	4만 원
해당인구('11)	100만 명	3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주: 1) 2014년 적용 A값 = 200만 원 가정.

2) 부부의 경우 위 기본액의 80% 지급.

자료: 이용하·김원섭(2013)

■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균등부분)를 포함하고 있어 지나친 재분배, 과중한 국고 및 미래세대 부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조정 장치를 두고 있음.

8) A값이란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적용되는 전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함.

-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보는 집단이 없도록 중복조정수준을 설정하되, 그 수준은 0원(2040년 가입)~최대 6만 원(2010년 가입)으로 함.

■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고 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제하의 지자체 부담분은 2017년까지 현 수준에서 동결·유지하되 2018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초연금 도입은 노후소득 확대보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 문제,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사적연금에 대한 구축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함.

-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공적연금(국민+기초연금) 소득보장수준은 평균가입자 기준으로 총 17~50%가 될 것이며, 노인빈곤율은 45.1%에서 34.7%(약 10%p 감소)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국민연금연구원 2013; 이용하·김원섭 2013).
-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0조 원, 2030년 23조 원, 2050년에 58조 원(2010년 불변가 기준)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정됨(윤석명 외 2013).
-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연금의 도입은 기여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공적연금 간 유기적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망됨.
- 기초연금 도입은 사적금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공적연금 강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증대는 단기적으로 사적연금 가입 등 사적저축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사적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인 급여수준이 낮아 고령화 위험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사적연금의 구축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화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공사적 연금간 유기적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기초연금 도입 등과 같은 공적연금제도 변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이에 기초연금 도입국가인 영국과 일본, 비례연금 도입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연금개혁사례에서 사적연금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3. 주요국의 공적연금 변화과정에서 사적연금의 대응전략

가. 영국

■ 재정부담 증가 및 공적연금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사적연금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인구 고령화 및 경제구조의 변화(불완전 고용, 저성장 등)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4년 15%, 2009년 16%, 2034년 2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16세 이하 비율은 동 기간 21%, 19%, 1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영국 통계청).

-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와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고용 불안정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연금체계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공적연금제도의 복잡성⁹⁾으로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됨.

■ 1980년대 이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전략은 공적 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적연금의 강화, 자발적 대체방식(crowding out) 등 소득보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남.

-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저성장,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연금개혁 시 공적 소득보장기능 강화 및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게 됨(재정안정화와 소득보장 균형 모색).

-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연동으로 급여 조정), 국가이충연금(S2P)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2030년까지 정액으로 전환함.

-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수급연령 상향조정함(2024~2044년에 걸쳐 65세에서 68세로 조정).

- 이러한 연금 개혁과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3

9) 영국 공적연금 보험료는 통합보험료 방식으로 사회보험료 전체에 대해 징수되고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재원이 분배되는 구조여서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층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음.

- 영국 공·사연금 체계를 보면, 조세로 운영되는 0층의 연금크레딧 제도가 있으며, 그 위로 기여를 전제로 하는 1층 공적연금인 기초연금(BSP: Basic State Pension)과 2, 3층을 구성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존재함.
- 이러한 특성은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 운영방식, 적용 및 수급 대상자 등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됨.

〈그림 1〉 영국의 공·사연금 체계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스택홀더)퇴직연금 /NEST SERP (1978-2002) S2P (since 2002)		(스택홀더)개인연금	
공적 연금	1층	기초연금(BSP: Basic State Pension)			
공공 부조	0층	연금크레딧 (보장크레딧 + 저축크레딧)			

※ 통합 사회보험료 부과

■ 사적연금 적용에는 준강제성을 두고 공사연금간 역할 관계는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전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자동 가입 ‘개인계좌’ 기업연금제도(NEST)를 도입·시행하고 있음(2008년 도입, 2012년 시행).
- 적격 기업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22세부터 적용하도록 함(2012년 10월부터 250명 이상 사업장, 2017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 적용하며, 자영자 및 대상연령 이외의 근로자도 희망 시 누구나 가입 가능함).
- 탈퇴는 가입 이후 선택 가능하며, 사용자 최소 3% 기여, 근로자 4% 부담, 정부는 조세경감 형태로 약 1%를 제공함(따라서, 최소기여율은 약 8%p이며, 급여수준은 중위 소득자의 경우 약 15%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됨).
- 근로자의 기금 인출과 유입은 금지되어 있음.

- 공적연금(BSP 및 S2P)은 소득재분배에 기초한 빈곤완화(장기적으로 모두 정액급여화, 저소득층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NEST)은 소득비례에 의한 소득유지기능(중산층 이상 위주)을 담당함.

나. 미국

■ 1970년대 말부터 연금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공적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금재정의 악화이며, 사회보장기금의 수지적자가 1970년대 말에 30억 달러, 1982년 113억 달러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됨.
 - 이러한 배경하에 1983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연기금 수지가 개선되지 못하였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공적연금 지출 확대로 수지가 악화됨.
- 이후 연기금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미국 연금개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부분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보수파와 현행 제도를 폐지하여 민영화로 전환을 요구하는 개혁파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공적연금 개혁의 특징은 1937년 사회보장연금 시행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혁이 진행되었으나 부분적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사회보장연금은 1937년 시행된 이후 더 많은 국민에게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이 심화되자 1983년에 처음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함.
 - 1983년에 사회보장세를 5.4%에서 5.7%로 상향조정, 지급개시연령은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 상향조정(65세→67세), 급여액을 물가지수와 임금인상 지수 중 낮은 지수에 연동, 연방공무원의 국민연금에의 통합일원화 등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재정이 개선되지 않자 미국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1996년에 제정함.

- 미국은 ‘복지에서 취업으로(Welfare to Work)’를 정책목표의 취지를 그대로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연금개혁안이 1990년대부터 제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함.
- 클린턴 정부시절에 신설된 사회보장자문위원회는 사회보장연금의 부분적 수정안을 위한 급여유지안(Maintain Benefits Plan)과 민영화를 위한 개인구좌안(Individual Accounts Plan), 개인보장구좌안(Personal Security Accounts)을 1996년에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개혁논의를 연장하여 개인계정의 신설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세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국회 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함.

■ 공적연금의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적연금 시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함.

- 세법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적격연금플랜(qualified pension plan)을 1942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개인 사업가와 그 종업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Keogh Plan을 1962년에 도입함.
-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ERISA)을 제정하여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개인형 퇴직 계좌제도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도입함.
- 아울러 가입자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하는 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내국세법 개정을 통해 1973년 401(k)를 도입함.
- 2006년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 개혁법인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을 제정함.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 퇴직연금 적립기준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한시적 연금세제 혜택 연장,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한 연금지급보장 보험요율을 인상함.

■ 이러한 연금 개혁과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미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으로 부르는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을 1층으로 하여 3층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음.

- 미국의 연금제도는 공·사연금의 총 소득대체율이 78.2%¹⁰⁾ 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인구의 약 94%가 가입하는 등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정착됨.
- 미국의 공·사연금 체계를 보면, 조세로 운영되는 0층의 보충소득제도(SSI)가 있으며, 그 위로 기여를 전제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층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OASDI)과 2, 3층을 구성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존재함.

〈그림 2〉 미국의 공·사연금 체계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정 (IRA)	
공적 연금	1층		사회보장연금(OASDI)		
공공 부조	0층		보충소득제도(SSI)		

■ 시장경제를 우선시하는 국가철학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사적연금과 사적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연금제도는 사적연금시장이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는 등 전통적으로 사적연금이 가장 발달된 국가의 제도이며, 주요국의 사적 연금모델 개발 시 참고가 되고 있음.
- 가계자산에서 은퇴자산 비중은 35.9% 수준, 사적연금은 17.4조 달러규모로 세계에서 53.2%의 자산 보유비중(1위),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38.8%(평균소득자)¹¹⁾ 수준임.
- 미국은 이미 1890년대에 민간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퇴직연금이 개발 및 발전되어 기업 및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선택의 폭이 다양함.

10)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p. 121.

11)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p. 121.

다. 일본

■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수급세대는 증가하는 반면 부담세대는 감소하여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국민연금 수급률 증가(1971년: 3.1% → 1995년: 61.7% → 2006년: 82.2% → 2009년 89.3% → 2011년 90.2%)로 2011년 65세 이상 인구 중 96.9%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반면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미납문제가 심각하여 2012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59.0%로 목표치 60%를 4년 연속 하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보험료 납입세대간 소득재분배 불균형으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연금에서 1940년생의 경우 기여금 대비 4.5배(2010년 기준)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반면, 1990년생은 1.5배의 연금을 수령함.
 -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수급연령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을 종전의 약 60%에서 2023년까지 50%로 하향조정 중임.
-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 확대로 정부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태임.
 - 국채 발행을 통해 공적연금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 확대로 인하여 국가 채무비율이 2012년 220%를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임.
 - 일본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급여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정부의 지출예산 중에서 편성한 사회복지 지출예산(일반사업예산 중 약 50%) 중에서 공적연금이 약 50%를 차지함.
-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에서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인구구조 및 경제·사회변화에 대비한 공·사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
 - 저성장 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세수부족과 보험료 수입 감소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의 특징은 미국과 유사하게 근본적 연금제도 개혁(structural reform) 없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와 급여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을 추진함.

- 1994년, 인구 고령화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2001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하도록 장기계획 수립, 연금보험료를 2025년까지 3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연금급여를 총임금이 아닌 순임금에 연계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
- 2000년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주요내용은 연금의 급여율을 5%로 인하,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 상향조정(2013년 60세 → 2025년 65세) 결정, 재직노령연금제도 도입(2002년 시행),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학생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폐지, 공적연금 역할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혁 실시 등임.
 - 아울러 연금 급여에 매크로경제슬라이드를 도입, 매 5년마다 재정검정 실시와 보험료수준 고정방식을 도입,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후생연금보험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
- 2007년에는 70세 이상의 일정 이상 소득자 후생연금보험 지급정지 시행, 노령후생연금 연기 지급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무원연금 등 공제연금제도와 후생연금보험을 2015년까지 통합 추진하는 관련법이 통과됨.

■ 이러한 모수적 개혁에 따라 현행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음과 같은 다층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음.

- 일본의 공·사연금 체계를 보면, 기여를 전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층의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2, 3층의 후생연금 및 퇴직연금이 있으며, 임의가입 개인연금이 4층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림 3〉 일본의 공·사연금 체계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사적 연금	4층	개인연금, 개인형 확정각출연금		
	3층	퇴직연금 (확정급여, 확정각출, 후생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공적 연금	2층	후생연금	대행제도	
	1층	국민연금(기초연금)		
공공 부조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일본은 1980~1990년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확대되면서 공적연금의 보장수준도 높아져 사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 특히, 30~40년간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정책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는 사적연금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었음.
- 그러나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하는 대신 신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추구한 2000년의 연금제도 개혁과 사적연금의 규제완화는 21세기 저성장 및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 사적연금 발전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2000년 이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를 통한 사적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2002년 개인연금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이후 변액연금 및 금리연동형보험 등 개인 연금이 큰 폭으로 성장함.
 - 생·손보사가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관련 상품을 포함한 개인보험을 상대방의 보험회사 영업조직에 교차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변액연금 상품 개발 확대, 2002년 변액연금을 판매한 이후 GMAB, GBDB 등 다양한 변액상품 개발 및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이 확대됨.
 - 연금전환 및 연금 증액 특약 개발 활성화, 보험료 적립금을 원금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연금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약전환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함.

라. 독일

■ 인구 고령화는 납입 및 수급세대 불균형을 초래하고 연금재정을 악화시킴.

- 노인부양비용이 2000년 대비 2050년에 2배로 증가하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1.9%에서 16.9%(2050년)로 증가함.
-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정책으로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연금지출의 약 1/4을 국고가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총연금보험료는 20%에 육박하고 20~30년 후에는 25~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 통일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와 공적연금 통합 등 통일비용 급증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됨.
-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으로 1990년대 국가부채 수준이 OECD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등 EU 내에서 독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였음.

■ 19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충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룸.

- 1972년/1992년 개혁의 주요내용은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가 도입됨.
 - 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재정안정화 개혁을 실시함.
- 2001년 주요 개혁내용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임.
 - 보험료 수준을 2020년까지 20% 이하, 2030년까지 22% 이하로 고정하였으며,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억제를 위한 조치가 있었고(2000년),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를 도입하였음(2001년).
 - 또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7%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 국고보조의 인증제 개인연금(Riester Rente) 도입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를 강구함.

- 2004년 개혁은 연금연동기준을 인구학적 변화에 연동시키는 연금지급 자동조절장치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이 DB형에서 준DC형제도로 전환하였음.
 - 연 보험요율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고정(2030년까지 22%)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장치(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함.
 - 2030년까지 표준연금수준을 43%까지 유지하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함.
- 2007년 개혁에서는 재정계산 결과 2004년 연금개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012~202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연금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보험요율을 현행 19.5%에서 2007년부터 19.9%로 상향 조정함.
- 2012년 개혁에서는 미가입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가입 의무화, 사용자의 임의 추가보험료제도 도입, 저소득 근로자 월 연금액이 850유로에 미달할 경우 정부지원, 리스터연금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이러한 연금 개혁과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독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음과 같이 3층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음.

- 독일의 공·사연금 체계를 보면, 조세로 운영되는 0층에 노인·장애인기초보장제도(GAE)가 있으며, 그 위로 기여를 전제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층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직역별로 분리됨)과 2, 3층을 구성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리스터 연금)이 존재함.

〈그림 4〉 독일의 공·사연금 체계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리스터연금)		
	2층		퇴직연금		
공적 연금	1층		국민연금(지역별 분리)		
공공 부조	0층		노인·장애인가조보장제도(GAE)		

■ 독일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이후 공적연금 역할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리스터 연금제도는 세제적격 요건에 부합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됨.
- 리스터 연금제도를 도입한 첫째 신헌약 실적이 257만 건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국가보조금 인상 등으로 2012년 약 1,500건으로 크게 증가함.
 -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2004년 7.5%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27.2%로 증가하는 등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함.
- 2001년 연금개혁으로 퇴직연금에서 기업의 종업원에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권리인정과 종업원 각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제도 등이 도입됨.
- 2001년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실시, 연금펀드 도입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짐.
 -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2007년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이 52%까지 확대됨.

4. 공적연금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적연금의 대응과 전략

■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연금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적정 및 필요 소득대체율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이 70%라고 할 경우, 40%는 국민연금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퇴직 및 개인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공사연금 자산축적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조정(선택 허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 퇴직연금과의 적용제외(Contract out)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2014년 7월부터 도입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설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세제 및 보조금 검토, 정부의 지급보장제 마련).

■ 사적연금 강화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약화될 것이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여기에 장수위험까지 겹쳐 노후필요소득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후필요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적연금의 강화가 그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것임.
- 노후소득을 공적연금에 주로 의존해 왔던 주요선진국(독일, 영국 등)의 경우도 공적연금 비중을 축소함과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고,
- 국제기구들(OECD, 세계은행, ILO 등)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과정에서 사적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대해 사적연금 강화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세제(보조금 포함) 혜택 강화형 사적연금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스웨덴 적립식 개인연금(프리미엄 연금) 도입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강화를 통해 약화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소득대체율 2028년 40%로 감소), 기초연금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세제(보조금 포함) 혜택 강화형 사적연금제도

로의 개선은 주요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준 강제형 사적연금제도 도입 및 일시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NEST 제도 및 스웨덴 적립식 개인연금 도입 등과 같이 일정 연령 혹은 가입조건을 갖출 경우 사적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는 형식적 다층소득보장체계로 중·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급여수준도 낮지만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으므로 준 강제형 사적연금제도 도입 검토가 요망됨.
- 또한 현행 퇴직급여제도에서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은 제한하고 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미 60세 이상이 된 경우 공적연금의 추가 납부기회가 없고, 근로세대라도 적용제의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공적연금으로 급여수준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을 통해 충분히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함.
- 한편, 두루누리¹²⁾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임.

■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노후준비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노후소득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연령기에 임박한 50대를 중심으로 노후소득준비 교육 등 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참 고 문 헌〉

국민연금연구원(2012. 3), 외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_____ (2013), 내부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3),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보고서(잠정)』.

보험연구원(2013), 내부자료.

윤석명 · 양해진 · 오신휘(2013. 5),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평가」,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용하(2013),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의의와 쟁점」, 한국연금학회 정책세미나.

_____ · 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厚生労働省, 2010～2011年 海外情勢報告

藤本 健太郎(2012), ドイツの年金改革の動向～支給開始年齢の引き上げ,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前田 俊之(2012. 11), 欧米諸国の年金事情, ニッセイ基礎研究所

岩間大和子(2005), EU 諸国の少子高齢化に対応した年金制度改革, 国立国会図書館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Paris.

SSA(2012),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www.ssa.com.

Ⅱ. 글로벌 이슈와 뉴스

1. 규제 및 감독

◆ 유럽 보험산업의 솔벤시 2 시행 준비 현황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2013년 7월 말,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유럽의 45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솔벤시 2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조사결과, 솔벤시 2 시행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솔벤시 2가 시행되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Ready)” 라고 답변한 보험회사는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 75%는 솔벤시 2 시행 준비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거나 현재도 준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솔벤시 2 시행이 지연되는 등 시행관련 불확실이 커지고 있어,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약 29%가 솔벤시 2 관련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솔벤시 2 준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하에서는 무디스 애널리틱사의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조사개요

■ 무디스 애널리틱(Moody's Analytics)사¹⁾가 2012년 4/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유럽의 45개 보험회사²⁾의 솔벤시 2 담당 임직원³⁾과 일대일 대면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 당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로 리스크 및 자본관리(Risk and Capital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임.

2) 업권별로는 생·손보 겸영회사가 24%, 생명보험 31%, 손해보험 36%, 건강·재보험회사 9% 등이며, 원수보험료(Gross Written Premium) 기준으로 100억 유로 이상 7개 보험회사(Tier 1), 30억 유로 이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유럽 보험산업의 솔벤시 2 시행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솔벤시 2가 시행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Ready)”라고 답변한 보험회사는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 75%는 솔벤시 2 준비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거나 준비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임.
- 조사대상의 44%는 Pillar 1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으나 Pillar 3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음.
- Pillar 1과 Pillar 3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며 솔벤시 2 시행을 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조사대상의 29%에 불과함.
- 조사대상의 27%는 솔벤시 2를 단순한 “규제시행(tick-box exercise)”으로 보고 있으며, 솔벤시 2가 리스크와 자본에 근거한 의사결정 기반(infrastructure)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솔벤시 2 시행이 지연되면서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60%는 솔벤시 2 준비 사업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음.

■ 반면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42%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솔벤시 2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응답한 42% 가운데 대부분이 Tier 1 등급의 보험회사들이며, 솔벤시 2 관련 투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상 100억 유로 미만의 8개 보험회사(Tier 2), 7억 유로 이상 30억 유로 미만의 14개 보험회사(Tier 3), 1억 유로 이상 7억 유로 미만의 9개 보험회사(Tier 4), 1억 유로 이하의 7개 보험회사(Tier 5)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CRO(33%), 선임계리사(9%), CFO(9%) 등이 다수임.

나. 조사결과

1) 전반적인 준비현황

■ 솔벤시 2가 시행되면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Ready)”라고 답변한 보험회사는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 “준비단계”란 솔벤시 2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솔루션을 이미 시범운영 중인 상태로 정의되는데, 수입보험료 100억 유로 이상의 7개 보험회사들은 모두 “준비단계”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소규모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2 준비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지연(Late)단계(11%)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64.5%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범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Developing)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수의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개발(Developing)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표준모형을 선택하고 있음.
- 특히 Pillar 2와 Pillar 3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항목별 준비상황⁵⁾

■ 조사대상 보험회사들의 55%가 Pillar 1⁶⁾에서 표준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

4) 무디스 애널리틱은 2013년 5월 기준 솔벤시 2 시행 준비단계를 “지연(Late)단계”, “개발(Developing)단계”, “준비(Ready)단계”, “대응(Compliant)단계”로 구분하였음. “지연단계”는 솔벤시 2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거나 사업이 착수되었어도 주요 사업단위 과제가 정의된 단계로 정의됨. “개발단계”는 솔벤시 2 관련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 “준비단계”란 솔벤시 2 관련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조사대상 보험회사들이 자사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평가한 결과임.

5) 솔벤시 2는 3층(Three Pillars)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Pillar 1: 양적규제(Quantitative Requirements), Pillar 2: 감독활동과 보험회사 내부 리스크 지배구조(Supervisory Activities and Internal Risk Governance), Pillar 3 보고와 공시(Reporting and Disclosure) 등임.

6) Pillar 1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적절한 수준의 자본을 설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과 건전성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할 때 감독당국이

가 내부모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 대형사들(원수보험료 100억 유로 이상)은 내부모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들은 좀 더 정교한(Sophisticated) 모형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62%)은 내부모형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준모형 선택 이유로 꼽았음.
 - 그 다음으로 표준모형구축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54%), 사용자 테스트(Use Test)⁷⁾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19%), 경영진 이해의 용이성(12%)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조사대상 보험회사 중 29.6%가 가까운 시기에 내부모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전략은 표준모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자본을 더 축적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Pillar 2⁸⁾ 측면에서는 “개발 단계(Developing)”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24%만이 Pillar 2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BNP Paribas의 설문조사⁹⁾ 결과에 의하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갖추고 있으나 솔벤시 2 의 Pillar 2는 이러한 지배구조 요소들을 한층 더 정형화하여 지배구조 체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임.

제시하는 표준모형과 보험회사가 선택하고 감독당국이 승인한 내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에 비해 각 보험회사 사업별 고유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할 수 있어 건전성요구자본(SCR)을 효과적으로 계산하여 표준모형 사용시 보다 적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사업 고유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므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 7) 사용자 테스트(Use Test)란 내부모형을 SCR계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결과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에 통합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독당국에 입증(demonstration)해야 하는 절차를 말함.
- 8) Pillar 2: 감독활동과 보험회사 내부 리스크 지배구조(Supervisory Activities and Internal Risk Governance)에서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Compliance)·회계 등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계리, 자본관리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정의하고 있음. Pillar 2의 목적은 건전한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를 보험회사에 통합(integrated)시키려는 것임.
- 9) Solvency II: Insuring risk compliance,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 and InteDelta(2011)에서 20개 유럽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 6월에서 2011년 9월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응답자의 50% 이상이 2013년 중에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9%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음.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란 보험회사가 현재 노출되어 있거나 앞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장단기 리스크를 식별(Identify), 평가(Assess), 모니터링(Monitor), 관리(Management), 보고(Report)하고 상시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을 결정하는 과정(Procedures)과 절차(Process)를 지칭. ORSA는 보험회사들의 사업전략과 전략 수행절차에서 리스크 지배구조(Risk Governance)가 적절하게 내재되어(Embedded)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리스크 한도(Risk Appetite)와 그에 상응하는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에 대한 분석을 규제하고 있음.

■ Pillar 3 규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Pillar 1과 Pillar 2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Pillar 3에 대한 대비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56%가 공시나 투명성 규제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Pillar 1, 2, 3를 동시에 준비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Pillar 3에 대한 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소재 보험회사의 솔벤시 2 준비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을 “준비단계”라고 할 경우 영국 5.0, 프랑스 4.6, 독일 4.2점을 기록하였음.
 - 스페인 3.9, 스위스 3.8, 노르웨이 3.6점으로 “초기단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 2.8, 슬로베니아 1.5가 최하위임.
- 유럽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모기업의 대응전략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솔벤시 2 시행 지연의 영향

■ 45개 보험회사 중 29%는 솔벤시 2 준비사업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시행 불확실성으로 관련 예산을 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11%는 시행지연으로 솔벤시 2 관련 대응 사업을 중단했고, 솔벤시 2 시행 계획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18%는 초기의 솔벤시 2 대응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응이 지연될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유럽 3대 기구¹⁰⁾가 솔벤시 2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음.¹¹⁾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6년 1월 1일 솔벤시 2 완전 시행을 가정한 솔벤시 2 준비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나, 시행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다. 시사점

■ 솔벤시 2 시행 준비는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솔벤시 2가 보험회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유럽의 대형보험회사(수입보험료 규모 100억 유로 이상)는 규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7억 유로 이상 100억 유로 미만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는 보험회사들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Pillar 1에 대한 준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Pillar2와 공시/투명성 강화를 규정하는 Pillar 3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10)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지칭함.

11) 장동식(2013.7.1), 솔벤시 2 최근 동향, 주간포커스, 「KIRI Weekly」.

-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과 건전성규제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산정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고 있음.

■ 솔벤시 2 를 단순한 “규제 시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솔벤시 2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게다가 시행일정이 지연되면서 솔벤시 2 시행 관련 불확실성 확대는 보험산업의 솔벤시 2 시행에 대한 준비를 지연시키고 있음.

■ 솔벤시 2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솔벤시 2 가 시행된다면, 솔벤시 2 도입 취지가 제한될 수 있음.

- 솔벤시 2 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이 리스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조사결과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2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들은 솔벤시 2의 내용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함.

■ 국내에서도 자본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보험업계의 준비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보험업계의 준비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참 고 문 헌〉

장동식(2013.7.1), 솔벤시 2 최근 동향, 주간포커스, 「KIRI Weekly」.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 and InteDelta(2011), 「Solvency II: Insuring Risk Compliance」.

Moody's Analytics(2013.7.31), 「Solvency II: A Field of Missed Opportunities, Moody's Analytics 2013 Solvency II Practitioners Survey」.

◆ 경추손상 문제로 인한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의 적자 및 대책

이정환 선임연구원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은 2009~2010년 경추손상을 중심으로 한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영업 적자를 기록함. 이로 인해 영국 자동차 보험료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한 소송문화, 보험금소송대리 회사 수 증가, 경추손상과 관련한 잠재적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영국 정책당국은 과도한 소송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료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하여 최근에는 보험료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얻음. 우리나라에서도 경추손상으로 인한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이 이슈가 되고 있어 영국의 경추손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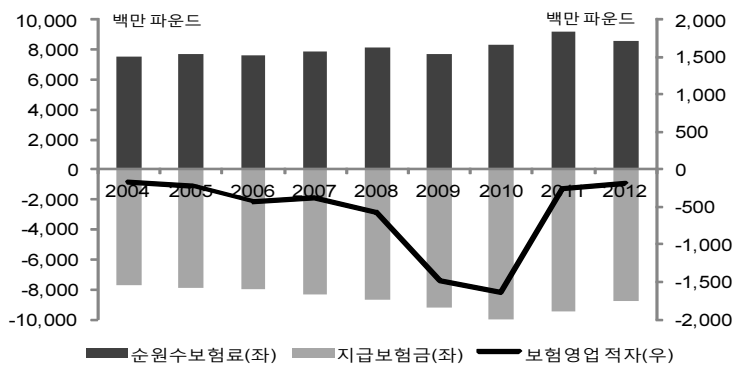
가.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의 보험영업 적자

■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은 2009~2010년 기간 중 급격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보험영업 적자를 경험함.

○ 자동차보험산업의 보험영업 적자는 지급보험금 증가가 원인이었음.

- 純원수보험료는 2004년 대비 2009, 2010년 각각 2.8%, 11.0% 증가한데 반해 지급보험금은 같은 기간 19.8%, 29.7% 증가함.

〈그림 1〉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및 보험영업 적자 추이



자료: Ministry of Justice, 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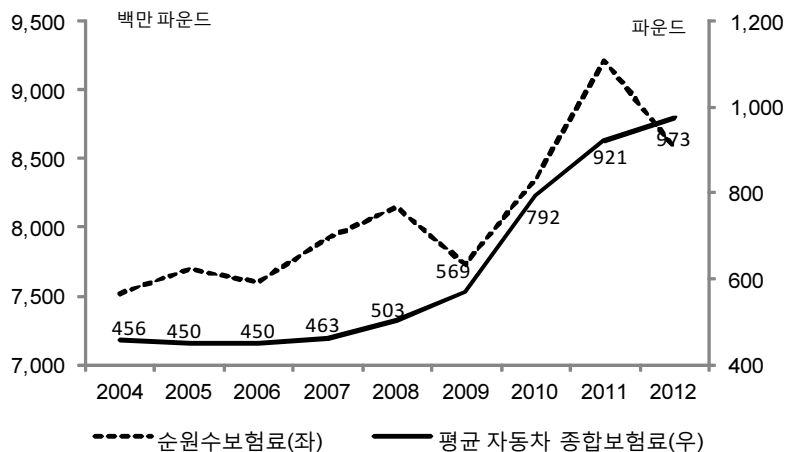
○ 보험영업은 2009~2010년 기간 중 가장 극심한 적자를 경험함.

- 보험영업은 2008년 5억 6,800만 파운드, 2011년 2억 5,100만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4억 8,800만 파운드, 16억 3,800만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함.

○ 평균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2009~2011년 기간 중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 2008년 503파운드를 기록하였던 평균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전년대비 2009년 13.1%, 2010년 39.2%, 2011년 16.3% 인상됨.
- 순수수보험료는 2009년 전년대비 5.1% 감소하였고 2010년 전년대비 8.0%, 2011년 10.3% 증가함.

〈그림 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평균 자동차 종합보험료 추이



자료: Ministry of Justice, ABI.

■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에서 관측된 지급보험금 증가는 교통량 감소,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다른 EU 국가와 대비됨.

○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량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¹²⁾

- 교통량 지수는 2004년 306.9, 2007년 314.1을 기록하여 195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 308.1, 2011년 303.8로 하락함.

12)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2012, 1).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5년 대비 2011년 현재 약 25%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2년 40,000명에서 2011년 25,000명으로 37.5% 감소하였음.

나. 보험영업 적자 원인: 경추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증가

■ 영국보험협회(ABI) 분석에 따르면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것은 대인배상 청구 건수 증가가 원인임.

-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배상 청구 건수는 2000~2005년 연평균 396,000건에서 2011년 791,000건으로 99.7% 증가함.
- 대인배상 평균 지급보험금은 2001년 2,556 파운드에서 2010년 3,565 파운드로 39.5% 증가함.

■ 특히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가운데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손상¹³⁾ 지급보험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4년 이후 지속됨.¹⁴⁾

- 영국의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가 전체 대인배상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8%로 EU 국가 평균 48%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EU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음.
- 영국의 경추손상 비중은 2004~2011년 기간 중 70%를 상회하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표 1〉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가 대인배상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년)

국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비중	78%	68%	61%	47%	35%	32%	30%	30%

자료: Ministry of Justice.

■ 결국 영국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경추손상 보험금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9~2011년 상승하였음.¹⁵⁾

13) 경추손상(whiplash injury)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가 꺾이거나 뒤틀림으로써 인대와 힘줄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함. 경추손상은 환자의 인지와 증상 설명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진단이 유발될 수 있음.

14) Ministry of Justice(2012, 12).

15) 또한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청년 계층 보험소비자를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운전자의 96%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차량 운행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됨.

- ABI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산업은 경추손상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으로 매년 20억 파운드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분은 90파운드에 달함.

■ 교통사고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영국의 소송문화, 보험사고 소개료 수취 허용, 경추손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어려움 등임.

- 영국은 소송비용 보조제도¹⁶⁾로 인해 비용 측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최근 들어 변호사 또는 보험금소송대리 회사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영국에서는 보험 판매 브로커나 설계사가 변호사 또는 보험금소송대리 회사로부터 소개료(referral fee)를 받고 보험사고를 소개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음.¹⁷⁾
 - 변호사들은 경추손상과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 소송으로부터 대략 1,200파운드의 수입료를 받음.¹⁸⁾
 - 2010년 영국의 보험금소송대리 회사는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3억 7,700만 파운드의 매출액을 기록함.

다. 경추손상을 가장 또는 확대한 잠재적 보험사기 증가

■ 경추손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경추손상을 가장하거나 손상을 확대 보고하는 보험사기 유발 요인이 존재함.

- 영국 법무부는 변호사나 보험금소송대리 회사가 경추손상을 가장하도록 부추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16) 소송비용 보조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공적 원조 제도로, 사법제도 개혁심의회에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전세대의 약 50%가 대상임.

17) 보험사고 소개료 행위가 보험금 청구 소송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감독당국은 2013년 4월부터 소개료 수취를 금지함.

18) The guardian(2012.2.13). 영국 정부는 변호사 수입료 인하를 추진함.

■ ABI는 경추손상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전체 보험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사기를 알면서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¹⁹⁾

- 2011년 기준 원수보험료 대비 지출에서 자동차수리 비용이 29%, 사업비가 26%, 경추손상 보험금이 20%, 50만 파운드 이하 대인 배상²⁰⁾ 청구가 15%, 50만 파운드 이상 대인 배상 청구가 9%를 차지하였음.
-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적발 비용을 고려해서, 도로 교통사고 협약금으로 설정된 2,000 파운드 이하의 경미한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 노력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금액 대비 보험사기 적발 비율이 2004년 1.62%에서 2011년 6.6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적발되지 못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라. 정부의 경추손상 대책 및 효과

■ 경추손상과 잠재적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함.

- 2012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수상은 영국이 경추손상 보험사기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영국 법무부는 2012년 12월 경추손상에 의한 보험금 청구 및 비용 삭감을 목적으로 한 현황 및 대책 보고서를²¹⁾ 발표함.

■ 법무부, 교통부, 보건부 등 영국 정부 당국은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 및 잠재적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 정부는 의료평가제도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 방법을 도입하여 경추손상과 관련 없

19) ABI(2013. 3).

20) 경추손상 보험금 제외.

21) Ministry of Justice(2012. 12).

는 증상 진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

- 정부는 의료평가제도(accreditation scheme)를 도입하며 동 제도에 따라 설립된 의료 평가기구는 의료기관 및 의사들을 평가함.
- 보험금 분쟁 소송 시 의료평가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의사만이 증거로 입증될 의료진단을 발급하도록 규정함.
- 그밖에 경추손상 진단 표준지침 작성, 의료 관계자경추손상 진단 훈련 시행, 진단 기준 및 감독 기준을 책정함.²²⁾

○ 과장된 보험금 소송 또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 억제 방안을 추진함.

- 소액 소송 금액을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인상함으로써 소송을 억제함.
-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보험사고 소개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험금 소송 변호사의 수입료를 인하하여 소송을 억제함.

○ 보험업계와 정부는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며, 특히 보험업계는 런던정시청 내 보험사기방지국²³⁾(The Insurance Fraud Enforcement Department)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함.

- 보험업계는 운전자 관련 빅데이터(Insurance Industry Access to Driver Database)를 통해 운전자의 차량 전과기록 및 벌점부과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차량 전과기록 은폐행위 방지가 가능해짐.

■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등에 힘입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13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됨.

○ 영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종합보험의 경우 2012년 7월 659.53파운드에서 2013년 7월 594.86파운드로 9.8% 하락하였으며, 분기별로는 6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²⁴⁾

○ 영국자동차협회는 정부의 경추손상 보험금 청구 억제 및 보험사기 방지 노력이 주요

22) ABI(2013. 3.).

23) 보험사기 전담 형사 및 재무조사관들로 구성된 34개 팀이 존재함.

24) 영국자동차보험협회의 AA British Insurance Premium Index는 2012년을 전후하여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 통계와 불연속성을 지님.

하였다고 평가함.

○ 2012년 합산비율은 10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20p 하락함.

〈참 고 문 헌〉

ABI(2013. 3), “Lifting the bonnet on car insurance: what are the real costs?”.

____, “Proposals to curb the UK’ whiplash epidemic”.

____,(2013. 8), Statistics online.

Ernst &Young(2013. 4), “Motor insurance reaches peak performance in 2012 but still fails to break even”.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2012. 1), “Cost of motor insurance: follow up”.

Ministry of Justice(2012. 12), “Reducing the number and costs of whiplash claims”.

The guardian(2012. 2. 13), “David Cameron backs new car insurance rules to cut cost of premiums”.

2. 경영전략

◆ 자동차보험산업의 위기감과 요율인상: 일본의 사례

최 원 선임연구원

2000년 이후 일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고령화 진전으로 손해율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산업의 수지 악화로 인한 적자규모 확대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평균 13.5% 인상되었고, 이어서 임의자동차보험 보험료도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1~2% 인상되었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으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음. 따라서 일본 자동차보험산업의 잇따른 보험료 인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성장 전환

■ 일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²⁵⁾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명목 GDP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FY2011과 FY2012에는 보험료 인상과 친환경차(에코카) 보조금 제도시행에 따른 자동차 신규판매 증가로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²⁶⁾의 경우 기준요율이 인상된 시기(FY2002, FY2003, FY2011, FY2012)에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임의자동차보험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부분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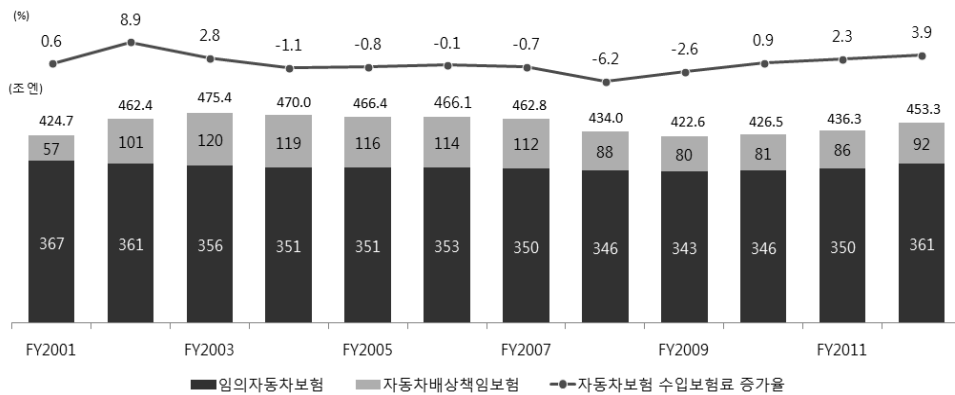
25) 일본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FY2012 기준으로 61.6%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FY2007까지 15% 수준이었으나 FY2008 이후 11~12%로 감소한 반면, 임의자동차보험 비중은 FY2008 이후 46%에서 50% 가까이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손해보험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비중은 4.5%이며 임의보험 비중은 13.6% 수준임.

26)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임의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됨.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FY2011과 FY2012에는 자동차 신규판매 증가세와 보험료 인상으로 각각 1.3%, 3.2% 증가율을 기록함.

- 일본 자동차보험산업의 낮은 성장세는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보험료 상승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며, 자동차보험산업의 적자 규모²⁷⁾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 일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배경

1) 자동차 등록대수 정체

■ 2000년 이후 일본 자동차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감은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의해 결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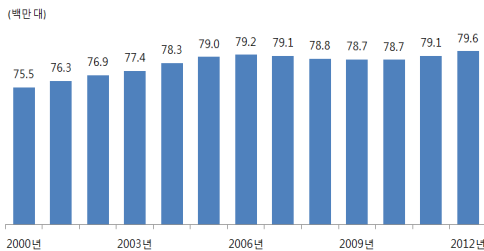
- 일본 자동차 내수 시장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험료 수준의 변화임.²⁸⁾

27) 2013년 1월 일본 자동차책임보험심의회에서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적자를 보고함(金融庁). 또한, FY2012 기준 일본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산업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였음(毎日新聞, 讀賣新聞, 産経新聞 등).

28) 자동차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요인은 가격요인인 보험료와 물량요인인 자동차 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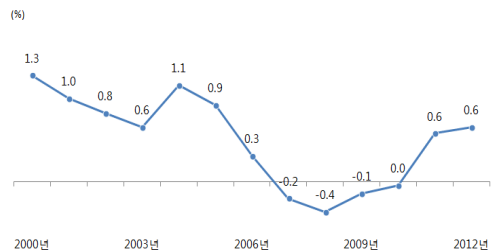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를 밑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단, 2011년과 2012년에는 친환경차(에코카) 보조금 제도에 힘입어 자동차 신규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폭의 증가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음.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자동차 보유대수의 뚜렷한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수입보험료 증감도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변화가 대부분이었음.

〈그림 2〉 일본 자동차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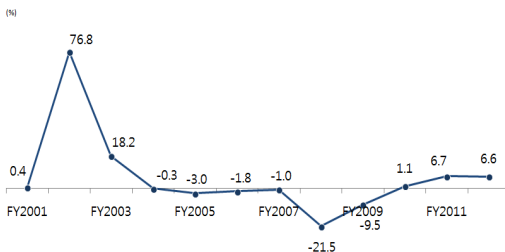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정보협회.

〈그림 3〉 일본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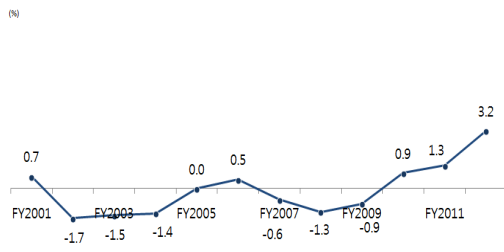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정보협회.

〈그림 4〉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그림 5〉 임의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2) 높은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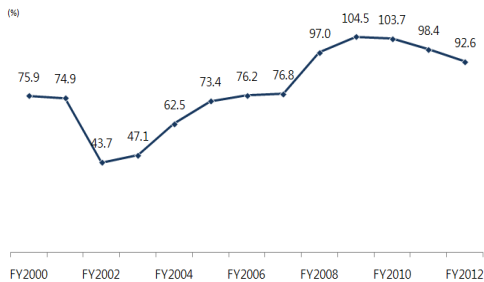
■ 고령화로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임의자동차보험 손해율 모두 2002년부터 상승함.

○ 특히,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은 2008년부터 100%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FY2008 이후 높은 손해율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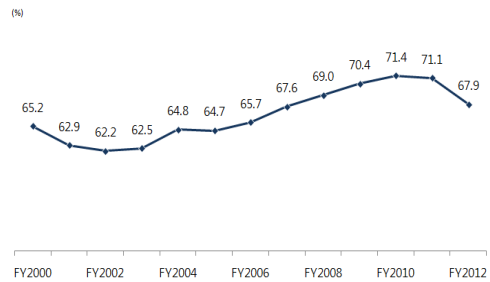
○ 특히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낮는데다 사고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가 비싸다는 점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임.

〈그림 6〉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손해율



주: FY2012 손해율은 2012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그림 7〉 임의자동차보험 손해율



주: FY2012 손해율은 2012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3)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인식

■ 대규모 재해증가, 인구구조 변화²⁹⁾, 사회적 현상³⁰⁾ 등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고,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29) 고령화와 고령화로 인한 고령운전자 비중이 증가함.

30) 젊은 층이 자동차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

-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등 대규모 재해가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이외의 손해보험 수지가 악화된 바 있으며, 다른 손해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의 수지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또한, 젊은 층의 자동차 구매 기피 현상으로 가입수요가 줄어들고 고령운전자 증가가 손해를 상승의 원인으로 나타남.

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내용

■ 일본 금융청은 2013년 1월 자동차책임보험심의회³¹⁾를 개최하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2013년 4월부터 평균 13.5% 인상하였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2002년 이후 손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FY2008 3% 가까이 인하되었으나 2008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후유장애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FY2011 11.7% 인상된 바 있음.
- FY2011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적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FY2013에 추가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법에서 정한 ‘No-Loss, No-Profit Rule’ 원칙에 의하여 별도로 운영되므로 보험수지(underwriting balance)를 맞추기 위한 적정수준으로의 보험료 재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임의자동차보험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이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손보재팬과 니혼코아손보는 2013년 4월 임의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 인상한 바 있음.
- 2013년 10월 1일부터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임의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1.7%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보는 1% 이상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였음.
- 도쿄해상일동화재도 2013년 하반기 약 1%대 임의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1)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손해율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기준 보험요율을 결정함.

라. 시사점

■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음.

- 자동차보험을 완전한 사회보험으로 인식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많고 자동차보험이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임.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보험소비자의 몫으로 적립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임의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 여론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손해율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일본 자동차보험산업의 요율인상 사례는 자동차보험산업 적자누적을 완화하기 위한 손해보험업계의 자율적 요율조정 여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임의보험과 책임보험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도 자동차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제도가 담지 못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압력이 누적되었다가 큰 폭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율조정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별첨 1 일본의 자동차보험 제도

■ 일본 자동차보험산업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CALI: 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과 임의보험인 임의자동차보험(VAI: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Act) 제정(1955년)으로 195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망, 영구장해, 신체상해 등과 관련한 배상책임을 보장함.

- 자동차검사제도와 연계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수입보험료 증감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보험요율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 사망 시 3,000만 엔, 영구장해 시 최대 4,000만 엔, 신체상해 시 120만 엔을 보장함.
- 'No-Loss, No-Profit Rule'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임의자동차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보험을 의미하며, 제3자배상책임(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자기신체상해, 무보험차량사고, 승객신체상해, 신체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함.

■ **No Loss, No Profit Rule:**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에서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의3).

○ 보험료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기본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사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적립금은 보험수지(underwriting balance)를 맞추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사업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사용함.

○ 또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이익(profit) 또는 손실(loss)이 발생할 경우 향후 적정 수준의 보험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보험료를 재조정함.

〈참 고 문 헌〉

金融庁(2013. 1), 「自賠責保険基準料率改定の届出について」, 第132回 自動車損害賠償責任
保険審議会議事次第.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13. 3), 「自動車保険の概況」, 平成24年度(平成23年度データ).

日本損害保険協会, 保険種目別データ.

_____ (2013. 3), 平成24年度 損害保険会社決算概況.

General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2013. 7), 「Automobile insurance in Japan」.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³²⁾

장동식 수석연구원

일본 금융청과 생명보험협회는 고령자의 특성 특히, 독거노인일 경우의 특성을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업무적 대응과제를 논의함.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이 논의를 토대로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위험 방지, 고령자 응대 업무처리, 그리고 신계약 체결을 위한 모집시 설명, 고령자 응대 등의 사례를 정리함. 일본 금융청과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령자를 위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가. 검토 배경

■ 일본 금융청은 2012년 9월부터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에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라운드 테이블³³⁾을 개최하였음.

-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감독당국, 생명보험협회 등은 “의료·간병 니즈”, “재무 니즈”, “생활 니즈” 등을 고려한 생명보험회사의 고령자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이 중 “생활 니즈”에 대해서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특성을 감안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를 논의함.

■ 일본 금융청은 2013년 5월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고령자 응대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함.³⁴⁾

32)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2013년 6월에 공표한 「超高齢社会における生命保険サービスについて：高齢者対応の向上」을 참조함.

33) 민관 라운드 테이블은 행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면담하는 것을 말함.(日本 金融庁 (2012. 9), 「官民ラウンドテーブルの開催」, p. 1)

34) 감독당국 및 생명보험협회 등은 공통번호제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함.(高齢化社会と金融サービス 作業部会(2013. 5), p. 12).

참고로 공통번호제도는 제도별로 부여하던 개인식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임.

○ 생명보험협회는 2013년 5월 민관 라운드 테이블 협의 결과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을 보유계약과 신계약 측면에서 마련하였음.

-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관련 위험 방지, 고령자 응대 업무 처리 등의 관점에서,
- 신계약에 대해서는 모집시 설명, 독거노인 응대, 고령자 응대 등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고 과제와 사례를 정리함.

나. 보유계약 측면

1) 서비스 제고 필요성 및 과제

■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보유계약의 청구권자(계약자·수익자 등)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음.

○ 보유계약의 계약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연금 지급 개시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표 1〉 연령별 생명보험계약 구성비(일본 국내사, 2012년 10월 기준)

(단위: %)

50세 미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40.8	20.1	22.0	13.4	3.5	0.2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会(2013. 6), p. 4.

〈표 2〉 개인연금 지급개시 건수

(단위: 만 건)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급개시 건수	48.9	77.2	107.8
1사 평균	1.5	2.3	3.3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会(2013. 6), p. 4.

■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징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여야 보험계약 유지 또는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청구권자(계약자·수익자 등)는 고령화될수록 보험계약 유지 또는 보험금 청구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능력·적용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구권자는 치매 등으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고령자의 생명보험회사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 따라서 청구권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유지 또는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에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 생명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청구권자의 청구능력 저하, 연락불능 및 대리인 부재, 사무처리 건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가입시부터 고령자에 대한 업무처리 위험을 인식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서류 간소화 및 고령자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표 3〉 고령자에 대한 보유계약 관련 서비스 제고방안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제		필요성
확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청구권자의 의사 능력·적용 능력 저하	• 청구의사 능력 저하(치매 등), 자필 서명 곤란(노화 등), 서류 준비 등 곤란(노화, 병원 시설 입주 등)
	• 연락불능 및 대리인 부재	• 연락 불능(주소 불명), 수익자 불명(법정상속인 등 불명), 대리인 부재(독신 생활 고령자 등)
	• 업무처리 건수 증가	• 보험금(급부금) 지급 건수 증가, 만기·연금 등의 기일 도래 건수의 증가
업무처리 위험 방지	• 가입시부터 계속해서 업무처리 위험을 인식하는 활동	• 업무처리 위험(예, 처리 불능, 처리 장기화 등)이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지 않음.
고령자 대응	• 서류간소화 • 고령자 응대능력 향상	• 연령 증가에 따른 니즈 변화(예, 친절한 설명, 알기 쉽게 작성)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会(2013. 6), p. 17.

2) 대응사례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업무 프로세스에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 대필 제도, 가족 등록제도 등을 활용하여 확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계약 내용 및 지급방법을 청구권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고령자에 대한 업무처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범용 디자인, 문서크기 확대, 글씨 크기 확대 등과 같은 청구서류를 개선시키고 있음.
- 비대면채널에 대해서는 고령자 상태에 따라 통화음량, 대화 속도 등을 조절하고 있음.

〈표 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관련 고령자 대응관련 주요 사례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제		서비스 제고 방안
확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청구자 의사능력 저하	• 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자필서명 곤란	• 조건부 규칙 운영, 대필 인정
	서류 준비 등 불가	• 보험증권 제출 폐지 등
	연락 불가(소재불명)	• 계약내용(수취인 정보 포함) 정기 통지 • 가족사전등록제(정보 열람 목적) • 계약자관련 필요 정보 수집(수취인, 가족 등)
	수취인 존재 불명 (법정상속인 불명)	• 계약내용 수취인 안내(동의 필요)
	대리인 부재	• 정기방문시 대리청구특약 권유
	보험금(급부금) 지급건수 증가	• 효율적인 지급시스템 개발
	만기·연금지급 건수 증가	• 자동송금 시스템화, 서류 간소화, 사전 만기 안내
업무처리 위험 방지	지속적 안내 (계약내용 및 청구 방법)	• 보험계약 안내서에 가족 정보 기재 • 주소변경 유무 확인, 휴대폰 번호 수집 • 본사 고령자 확인 제도(생존·청구 등)
고령자 응대	청구서류 간소화	• 범용 디자인 ¹⁾ , 문서크기 확대(A3화), 글씨 크기 확대 등 • 문서 확대 가능 단말기, 맞춤형 청구서 • 안내 책자(진행흐름, 사례 등 명시)
	고령자 응대 개선	• 간병인 사내 인정제도, 치매도우미 양성프로그램 참여, 고령자용 정보 제공 • 보조도구(스티커 등) 활용, 대화 조절 • 고령자 상태별 음량 및 대화 조절

주: 1) 범용 디자인은 성,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을 말하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도 함.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13. 6), pp. 18~20.

다. 신계약 측면

1) 서비스 제고 필요성 및 과제

■ 초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신규 고령 계약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개인보험 신계약 중 60대 계약자 비중은 2007년에 12.0%였으나, 2011년에는 17.8%까지 높아짐.
- 이 비중은 초고령사회로 진전될수록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음.

〈표 5〉 개인보험 신계약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연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7	14.8	19.9	24.3	15.5	13.5	12.0
2008	15.5	18.5	23.0	15.8	13.6	13.6
2009	14.9	17.8	22.7	16.3	13.4	14.8
2010	15.0	16.7	22.1	16.5	13.4	16.3
2011	14.4	16.2	21.4	16.7	13.5	17.8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会(2013. 9), p. 14.

■ 이로 인해 모집 및 신계약관련 업무에 고령자 특징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규 고령 계약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음.

- 신규 고령 계약자는 다른 연령 보다 보험계약관련 위험 및 단점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신규 고령 계약자는 은행창구에서 판매된 상품을 보험상품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고령 계약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모집 및 신계약관련 업무처리에 신규 계약자의 연령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 고령자 및 독거노인 특성이 모집 설명 등 모집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되어야 함.

〈표 6〉 고령자에 대한 신계약 관련 서비스 제고방안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제		필요성(의견, 고충 등)
모집 시 확실한 설명	• 모집 및 신계약관련 업무	• 소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함¹⁾ •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함
	• 신계약관련 후속업무	
	• 모집문서 등 개정	
독거노인 등 대응	•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과제	• 고령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음
고령자 대응	• 모집인 등 지도·교육	•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주: 1) 신규 고령 계약자는 은행창구 상품을 보험상품으로 인지하지 않고, 위험 및 단점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會(2013. 6), p.22.

2) 대응사례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성을 모집 업무 프로세스 등에 반영하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모집 시 70세 이상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대면 상담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음.
- 신규 고령 계약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담당자로부터 재확인 받도록 함.

〈표 7〉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관련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제	서비스 제고 방안
모집 및 신계약관련 업무	• 70세 이상 신규 계약자의 경우 2회 이상 대면 상담, 신청서 재확인 절차 수행
신계약관련 후속업무	• 다른 담당자에 의한 계약내용 재확인, 70세 이상 신규 계약자의 경우 계약내용을 다른 날에 재확인
모집문서 등 개정	• 중요 사항을 고령자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고령자 전용 무료전화 번호를 보충자료에 기재 • 가족(또는 친족)용 설명서를 별도 작성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과제	• 독거노인을 위해 동석한 지정담당자가 독거노인의 이해·의향·상황 등을 확인
모집인 등 지도·교육	• 고령자 응대 항목을 표준 신계약 처리지침에 반영

자료: 日本 生命保険協會(2013. 6), pp. 23~24.

다. 시사점

■ 생명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성 및 독거노인 특성을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고령 청구권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초고령사회로 진전될수록 청구권자가 스스로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신규 고령 계약자는 모집 설명 및 상품설명서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이 업무 프로세스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성년후견인 제도, 대필 제도, 가족 등록제도 등을 통해 활용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범용 디자인, 문서 크기 · 글씨 크기 확대, 신규 고령자 계약 재확인 등을 통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도 일본처럼 고령자 특성을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등에 반영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생명보험회사 등은 최근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이를 통해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자료 개선, 보험금 청구 방법 다양화, 고령자 전담 창구 운영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생명보험회사 등은 이와 같은 노력을 일본처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생명보험회사 등은 일본처럼 고령자 특성을 소비자 중심으로 반영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고령자 특성을 소비자 중심으로 반영한 신규 고령자 계약 재확인, 성년후견인, 대필, 가족 등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高齢化社会と金融サービス 作業部会(2013. 5), 「高齢化社会に対応した金融サービスの向上
にむけて」, 第30回 金融審議会 総会・第18回 金融分科会 合同会合議 會議資料,
金融審議会 金融分科会(2012. 7), 「我が国金融業の中長期的な在り方について (現状と展望)」,
金融審議会 総会 第28回・金融分科会 第16回 合同会合, 會意資料
金融庁(2012. 9), 「官民ラウンドテーブルの開催」
生命保険協会(2013. 6), 「超高齢社会における生命保険サービスについて: 高齢者対応の向上」
_____ (2012. 9), 「生命保険の動向」, 2012年版

3. 글로벌 경제

◆ 중국 경제 경착륙에 관한 중국 국내외의 평가

이소양 연구원

2013년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8%에 미달하는 수준임.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음. 반면 중국 정부는 성장을 둔화 속에서도 7%대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함. 7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중국 경제 경착륙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가. 검토배경

■ 2012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중국 경제성장률이 8%를 하회(2013년 2/4분기 7.5%)하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해외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으며 향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반면 중국 정부는 경착륙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 및 국내 경제 구조조정 등 요인을 감안할 때 7%¹⁾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함.
- 이하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함.

나.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배경

■ 중국 경제는 2010~2011년 9%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2/4분기 이후 경제성

1) 중국 국가정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판젠핑(范剑平)은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 및 국내 경제 구조조정 등 요인을 감안할 때 7%대의 경제성장률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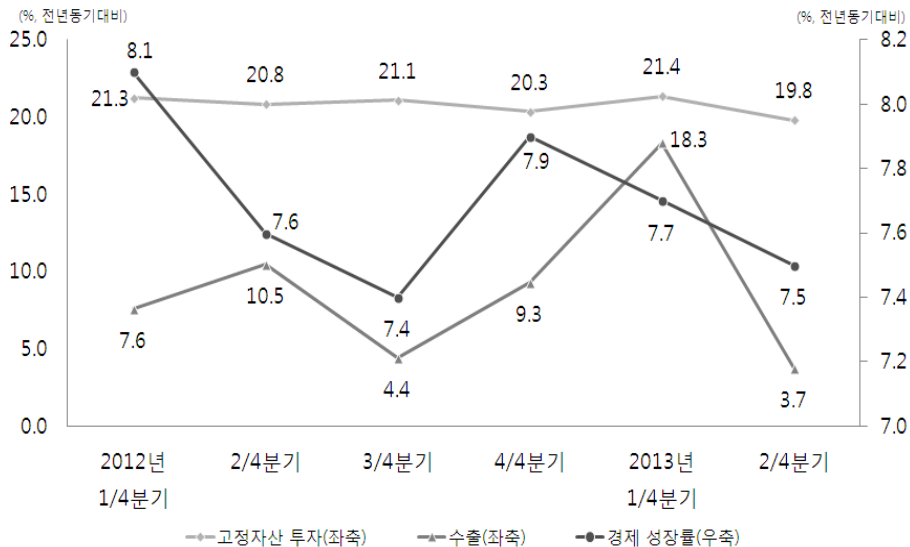
장률이 5분기 연속 7% 수준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분기 7.4%에서 4/4분기 7.9%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2013년 1/4분기 7.7%, 2/4분기 7.5%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증가율의 감소가 2012년 2/4분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분석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13.5%에서 2013년 2/4분기 13.1%,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21.3%에서 2013년 2/4분기 19.8%로 회복세가 미약함.
-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7.6%에서 2013년 2/4분기 3.7%까지 하락하였으며, 4.4%에서 18.3%, 다시 3.7%로 하락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HSBC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13년 3월 이후 2013년 6월까지 경기 위축의 임계점인 50선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경제 성장률, 투자 및 수출 증가율 변화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해관총서.

다. 해외 금융기관의 평가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으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IMF는 중국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그림자 금융 확대²⁾, 지방정부의 재정악화³⁾ 및 부동산시장 침체⁴⁾ 등을 지목하고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1%에서 0.3%p 하향조정한 7.8%로 수정함.

○ IMF는 구조조정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IMF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8년 이후 4%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며, 2030년까지 1인당 GDP는 미국의 1/4 수준에 머물러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4%, 8.2%에서 7.7%로 하향조정하였음.

■ 노무라홀딩스, 바클레이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함.

○ 노무라홀딩스(Nomura Holdings)는 중국 경제가 2014년 말 이전 경착륙할 확률이 약 33%라고 전망했으며, 소시에테제네랄(SG)은 중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함.

○ 바클레이스(Barclays)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와 산업생산 둔화로 향후 3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2)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을 통한 신용창출이 아닌 비은행금융회사, 비금융회사들이 창출하는 신용을 말하며, S&P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인 약 23조 위안으로 추정됨.

3) 중국 지방정부는 2009년 이후 그림자 금융을 통해 예산외 자금조달(off-budget financing)을 시작하였고, 이들을 광의의 정부부채에 포함할 경우 2012년 정부부채는 중국 GDP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4)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토지양도금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는 지방정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음.

5) 금융시장 자유화, 국유기업의 배당 확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 등임.

■ 또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주장과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전 칭화대 교수였던 패트릭스 쇼바넥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롬바르드 스트리트리서치(LSR)⁶⁾의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GDP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디플레이션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하였고, 소시에테제네랄(SG)의 알버트 에드워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주장함.

라. 중국 정부의 입장

■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7%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이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면서 당분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6월과 7월 2차례의 금리인하와 2012년 9월의 1조 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발표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신정부 출범 후 첫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⁷⁾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強)은 중국이 2020년까지 7%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7%대 성장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7월 중국 재정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누구도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함.
- 8월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중국 경제의 잠재력이 여전히 강하기

6) 영국의 경제연구기관.

7) 중국 정부는 성장전환, 산업재편, 금융선진화, 경제의 버블제거, 경제양극화 완화, 노동생산성 제고 및 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때문에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구조조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7월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저스틴 린도 중국 경제가 향후 20년간 7.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함.

마. 결론

■ 개선된 7월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구조조정의 성공여부가 중국 경제 경착륙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7월 수출증가율은 전월(-3.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5.1%를 기록함.
 - 반면 7월 소비증가율은 13.2%로 전월(13.1%)과 유사한 수준을, 투자증가율은 전월과 같은 20.1%를 기록함.
- 중국 국가정부센터 경제예측부 부주임 니우리(牛犁)는 7월의 경제지표가 나아진 것으로 경기 반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함.

〈참 고 문 헌〉

김세중(2013),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이소양(2013),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지만수(2013), 「중국 7%대 성장률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정기간행물』, 한국금융연구원.

한재진(2013),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국가통계국(2008), “중국통계연감 2008”.

_____ (2009), “중국통계연감 2009”.

_____ (2010), “중국통계연감 2010”.

_____ (2011), “중국통계연감 2011”.

_____ (2012), “중국통계연감 2012”.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Ⅲ. 해외보험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미국의 출구전략 시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미국과 유럽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월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6월 이후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채수익률이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였으나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엔화 약세 추세는 둔화되었음. 주가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는 3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7% 상승하였고 유럽 Stoxx 지수도 같은 기간 약 8% 상승하였음.

가. 금리

■ 미국 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4월 경제지표 부진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와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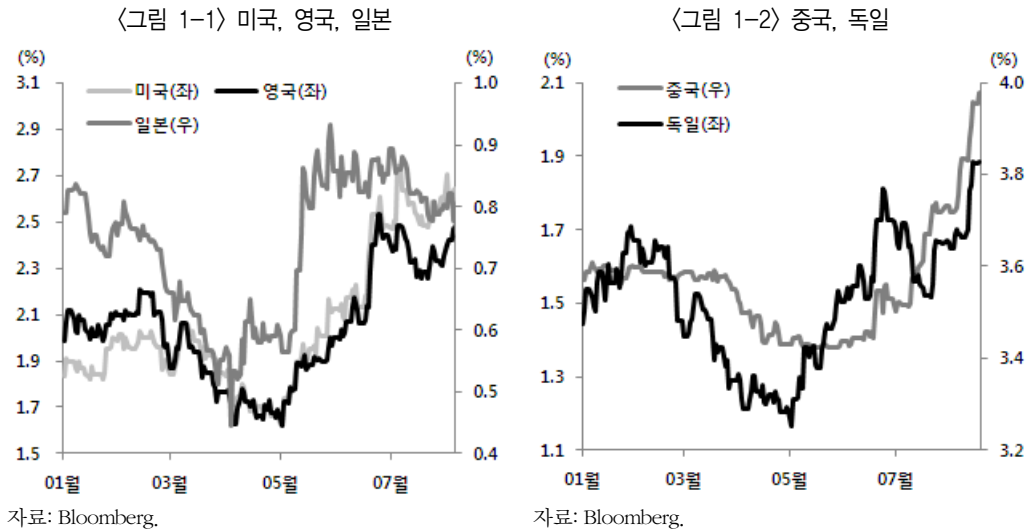
-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전인 4월, 실물 경제지표¹⁾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산되면서 3월 말 1.85%보다 18bp 하락한 1.67%를 기록함.
- 5월 말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으로 국채 수익률은 4월 말(1.67%)보다 46bp 상승한 2.13%를 기록하였으며, 채권수익률도 상승하였음.
- 7월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이 1.7%로 양호하고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7월 말 취업자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²⁾으로

1) 3월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14만 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신규주택착공호수가 전월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음.

2)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감(천 명): 4월 19만 9,000명 → 5월 17만 6,000명 → 6월 18만 8,000명 → 7월 16만 2,000명.

나타나 8월 초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1〉 국가별 국채(10년물) 수익률 추이



■ 2/4분기 중 상승세를 보인 영국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7월 초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8월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확대로 상승하였음.

○ 4월, 키프로스나 트로이카(IMF, ECB, EU)가 구제금융 조건 완화에 합의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재발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었으며, 5월 이후 영란은행과 ECB가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였음.

■ 일본 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5월 29일 0.93%까지 급등하였다가 6월 들어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 8월 16일 현재 0.76%를 나타냄.

○ 4월,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기대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국채수익률은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5월,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선진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하며 일본 국채 수익률(10년 만기)도 5월 29일 0.93%까지 급등하였음.

○ 6월 중반 이후 국채 5년물 및 2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수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나.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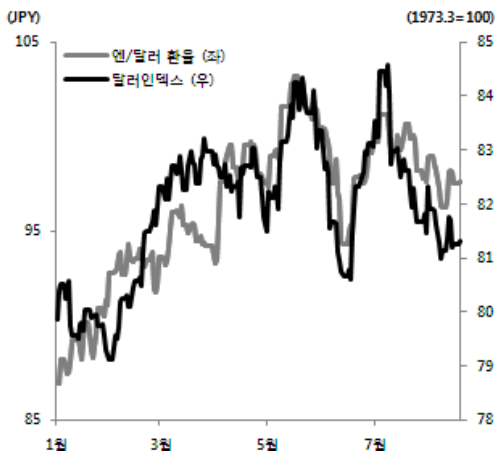
■ 달러는 미국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과 ECB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음.

-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과 ECB의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음.

■ 엔/달러환율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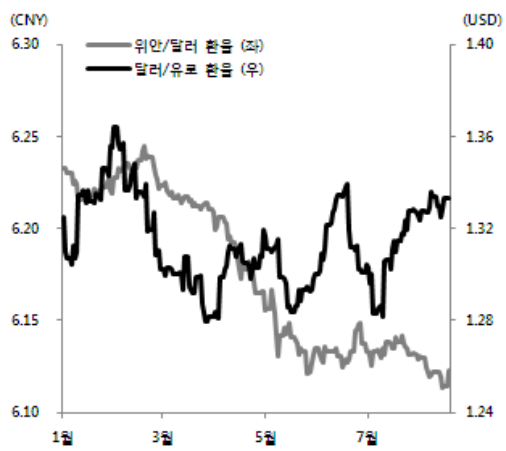
-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3월 말 94.22엔에서 4월 말 97.58엔으로 3.36엔 올랐음.
-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7월 10일 100.08엔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2〉 엔/달러환율과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3〉 위안/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달러/유로환율은 ECB의 저금리 정책과 미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시화 등 상반된 통화정책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음.

- 유로화는 4월 키프로스 구제금융 시행, 이탈리아 연정 출범 등에 따른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5월 2일 ECB가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면서 달러화 대비 약세로 전환하였음.
- 미 연준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와 7월 4일 ECB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발표로 7월 9일 1.2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8월 16일 1.33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013년 4월 초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인민은행 부총재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시사로 위안/달러환율은 4월 초 6.21위안에서 8월 16일 6.11위안까지 하락하였음.
- 또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 주가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경기회복 가시화로 3월 말 14,578.54에서 8월 4일 15,658.36까지 7.4% 상승함.

- 주택경기과 고용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 2/4분기 1.7% 성장하는 등 실물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임.
-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시사로 5~6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실물경기지표 개선으로 출구전략 시행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어 지수는 상승세를 보임.

■ 유럽 Stoxx 지수는 ECB의 통화정책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정치 불안³⁾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3월 말 2,624.0에서 8월 16일 현재 2,854.3로 8.8% 상승함.

3) 7월 초, Gaspar 재무장관(사회민주당)과 Portas 외무장관(국민당 당수)이 사퇴의사를 발표하였음. 중도우파 연정을 구성하는 국민당의 당수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7월 12일 포르투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7.27%를 기록함(국제금융센터, 2013. 7. 4).

- 유럽 Stoxx 지수는 4월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지표 개선⁴⁾, 이탈리아 정국 안정 기대감과 5월 ECB의 금리 인하 결정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6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과 그리스 불안 재부각 등으로 6월 말 2,602.6을 기록함(5월 말 대비 6.03% 하락).
- 그러나 7월 들어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결정⁵⁾, 미 연준의 양적완화 유지 언급과 ECB의 저금리기조 유지 시사 등으로 8월 16일 현재 2,854.3까지 상승함(6월 말 대비 9.7% 상승).

■ 일본 닛케이 지수는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BOJ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시화,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5~6월 하락세를 보인 후 최근 반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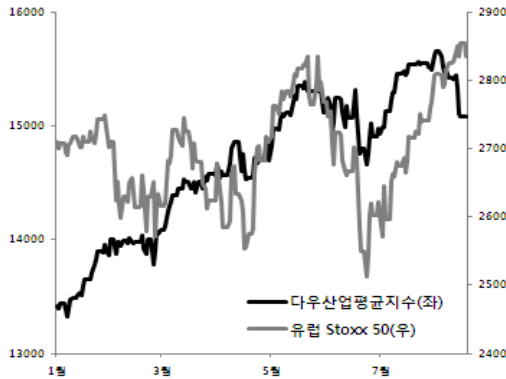
-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닛케이지수는 3월 말 12,397.91에서 5월 21일 15,381.02까지 24.1% 상승하였음.
- 이후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감, 금융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실망감⁶⁾,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언급 등으로 6월 13일 12,445.38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선진국 주가지수 상승으로 8월 4일 14,466.16까지 회복하였음.
- 그러나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8월 16일 13,650.11까지 하락함.

4) 프랑스의 2월 중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0.3%(2012년 4/4분기 -0.3%)를 기록함.

5)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IMF, EU, ECB)는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에서 총 65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 분할지급에 합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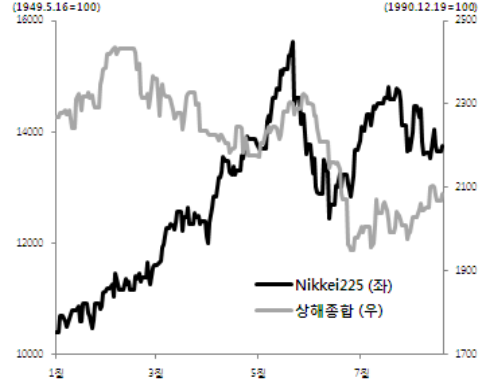
6)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5월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상승은 경기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5월 23일에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엔을 공급하여 금리 상승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됨(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2호).

〈그림 4〉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5〉 일본과 중국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상해 종합지수는 경기둔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말 이후 상승세를 보임.

- 4월 말 상해 종합지수는 3월 말 대비 2.6% 하락한 2,177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4분기 경제지표 부진⁷⁾과 이로 인한 IMF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8.1% → 8.0%)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⁸⁾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5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 저가매수세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5.6% 상승하였음.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위안화 강세, 경기 둔화 우려 지속, SHIBOR⁹⁾ 급등 등으로 6월 상해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4.0% 하락한 1,979.2를 기록함.
- 7월 이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정부의 단기유동성 공급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8월 13일 상해종합지수는 2,104.07로 6월 말 대비 6.3% 상승함.

7) 20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7%에 그쳐 2012년 4/4분기 성장률을 하회하였고, 4월 수출증가율이 3월에 비해 하락함.

8) 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2013년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이 강조되었음.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9) 중국은행간 유동성을 반영하는 Overnight SHIBOR(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상하이은행간콜금리)는 6월 20일 13.4%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7년 SHIBOR 금리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임. 6월 초 중국내 일부 중소형 은행의 단기자금 청산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의 경우, 2013년 1/4분기 신규계약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7.0% 성장하였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6.6%, 22.5% 성장하였음. 미국의 성장세는 유니버설보험(8.0%)과 변액유니버설보험(10%)이 견인하였고 영국의 경우 경기회복세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가 생명보험 성장세를 이끌었음. 일본은 사망보험과 개인연금이 성장세를 주도하였음. 중국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성장하였으며, 인보험 중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0.7% 성장하였음.

손해보험의 경우 2013년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미국 4.1%, 일본의 경우 FY2012 4/4분기 기준으로 2.6% 성장하였음. 미국의 경우 대재해 손실에 의한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감소하였음. 일본의 경우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성장하면서 손해보험산업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1/4분기 기준으로 16.3% 증가한 1,513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미국 동향¹⁰⁾

가. 생명보험

■ 2013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은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7% 성장(신규 연납화 보험료¹¹⁾ 기준)하였음.

- 유니버설보험의 신규 연납화 보험료는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은 주가지수 상승으로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유니버설보험 중 가장 큰 비중(35%)을 차지하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 또한 전년동기대비 9%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 성장하였으나 비중은

10)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1)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2012년 말과 같은 8%에 불과함.

- 2012년 말 13,000 포인트 수준에 머물렀던 다우존스 지수는 2013년 3월 말 14,000 포인트를 상회하면서 12.7%의 상승률을 나타냄.

- 상품구조의 단순성과 종신보장에 대한 니즈확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신보험은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고 유니버설보험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기준 비중의 경우 종신보험이 2012년 말에 비해 1%p 커졌으며, 유니버설보험은 1%p 줄어들었음.

- 유니버설보험 비중이 42%로 가장 높고,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은 각각 31%, 19%, 8% 수준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0	6	4	20	8	43	8	4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	-6	-4	16	0	8	10	8
정기	1	-3	-1	4	0	19	3	19
종신	10	9	5	6	7	30	7	31
계	3	4	3	12	6	100	7	1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3, 6),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3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모두 크게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355억 달러로 2012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 15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2년간 최저 수준임.
- 인텍스형 연금의 경우에도 2011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80억 달러 이하의 신규 보험료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8.0	157.9	36.9	38.7	36.8	35.0	147.4	35.5
	증가율	-1.3	12.4	-6.6	-4.7	-7.5	-7.9	-6.6	-3.8
	비중	66.8	66.2	67.3	67.9	67.8	67.0	67.5	69.2
정액연금	보험료	18.9	80.5	17.9	18.3	17.5	17.2	70.9	15.8
	증가율	-2.6	-1.7	-10.5	-14.1	-13.8	-9.0	-11.9	-11.7
	비중	33.2	33.8	32.7	32.1	32.2	33.0	32.5	30.8
합계	보험료	56.9	238.4	54.8	57.0	54.3	52.2	218.3	51.3
	증가율	-1.7	7.2	-7.9	-7.9	-9.7	-8.3	-8.4	-6.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6), *U.S. Individual Annuities*.

■ 2013년 1/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2.4%, 독립설계사가 15.3%, 증권중개인, 은행, 직접판매 등이 각각 12.4%, 14.1%, 8.7%의 비중을 차지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34.4%, 24.5%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의 경우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4/4	1/4	2/4	3/4	4/4	1/4
은행	13.4	13.5	13.7	13.1	12.9	14.1
전속설계사	23.0	23.8	21.8	21.9	23.7	22.4
직접판매	8.2	8.8	9.6	8.3	8.9	8.7
독립중개인	22.1	23.2	23.2	25.0	23.1	25.0
독립설계사	16.2	16.3	15.6	16.4	16.5	15.3
증권중개인	14.8	12.6	14.0	13.4	12.5	12.4
기타	2.3	1.8	2.1	1.8	2.3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3. 6),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3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¹²⁾과 Non-cancellable¹³⁾

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2012 2/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함.

○ Multilife 보험¹⁴⁾이 NC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Non-multilife 보험 판매 감소로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2.7% 감소함.

12)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3)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4) 원래는 부부가 따로 2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Multilife보험은 보험상품 한가지로 부부 둘 모두를 보장하는 보험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C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83.1	347.9	107.6	67.5	75.0	77.9	327.9	96.3
		증가율	3.4	1.1	0.4	-11.2	-8.2	-6.3	-5.7	-10.4
		구성비	67.1	70.0	75.4	65.9	65.2	64.9	68.3	73.5
	Non-cancellable	건 수	40.8	149.2	35.1	34.9	40.0	42.8	152.8	34.7
		증가율	4.5	6.2	5.0	2.5	-2.1	4.8	2.5	-1.1
		구성비	32.9	30.0	24.6	34.1	34.8	35.6	31.8	26.5
	전체	건 수	123.9	497.1	142.7	102.4	115.0	120.1	480.2	131.0
		증가율	3.8	2.6	1.5	-7.0	-6.1	-3.1	-3.4	-8.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3.1	217.6	64.5	46.7	49.5	51.3	212.0	57.9
		증가율	4.2	3.1	0.6	-4.3	-4.0	-3.5	-2.6	-10.3
		구성비	39.9	42.0	47.6	37.6	37.1	38.3	40.2	45.6
	Non-cancellable	보험료	80.1	300.9	71.1	77.4	83.8	82.7	314.9	69.2
		증가율	5.0	7.2	6.8	5.8	3.3	3.2	4.7	-2.7
		구성비	60.1	58.0	52.4	62.4	62.9	61.7	59.8	54.4
	전체	보험료	133.2	518.5	135.6	124.0	133.3	133.9	526.9	127.0
		증가율	4.7	5.4	3.8	1.8	0.5	0.6	1.6	-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6),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 2013년 1/4분기 미국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1,280.9% 증가한 5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감.
 - 모기지 및 금융보증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4.1%를 기록하였는데 기업보험은 3.2%, 개인보험은 5.0%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742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대재해 손실에 따른 지급보험금은 2012년 1/4분기 34억 달러에 비해 11억 달러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합산비율은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 99.0%에서 94.8%로 개선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은 감소하였지만 실현자본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128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114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 실현자본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억 달러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2억 달러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77억 달러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자기자본은 5,943억 달러를 기록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2					CY2013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112,382	114,337	121,769	108,109	456,597	117,110
	증가율	3.1	4.2	5.1	4.8	4.3	4.1
지급보험금	금액	75,614	85,280	82,982	91,247	335,123	74,214
	증가율	-4.0	-10.6	-7.7	13.4	-2.7	-1.9
보험영업이익	금액	294	-6,526	529	-9,050	-14,753	5,192
	증가율	-107.3	-66.1	-105.0	1,113.7	-57.3	1280.9
계약자 배당금	금액	521	285	315	998	2,119	552
	증가율	12.8	-18.1	21.2	27.6	14.4	6.2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227	-6,811	214	-10,049	-16,873	4,640
	증가율	-94.9	-65.3	-102.0	557.7	-53.6	-3322.2
투자영업이익	금액	11,656	12,062	11,410	12,585	47,713	11,385
	증가율	-7.5	-1.3	-2.7	0.3	-2.8	-2.3
실현자본이익	금액	685	1,020	1,245	3,251	6,201	1,380
	증가율	-30.7	-61.0	-33.9	115.3	-11.4	100.3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2,341	13,083	12,655	15,836	53,915	12,765
	증가율	-9.2	-11.8	-7.0	12.6	-3.9	3.4
세전 영업이익	금액	11,786	6,577	12,058	2,713	33,134	15,885
	증가율	36.6	-189.5	451.6	-76.8	118.5	33.8
당기순이익	금액	10,141	6,282	10,433	6,390	33,246	14,394
	증가율	29.6	-305.0	206.2	-42.3	72.9	40.9
자기자본(surplus)	금액	570,665	567,770	583,489	586,874	586,874	607,737
	증가율	0.7	1.6	7.6	6.0	6.0	5.9
지급준비금	금액	570,645	574,683	576,442	579,278	579,278	572,504
	증가율	1.2	-0.1	-0.4	1.2	1.2	0.2
합산비율		99.0	105.3	98.5	110.4	103.2	94.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3. 6), P/C Insurers' Overall Results Improved in First-Quarter 2013 as Underwriting Turned Profitable for the First Time in Year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 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영국 동향¹⁵⁾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전체〉

■ 2013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 규모는 전체 보험료¹⁶⁾ 기준으로 134억 4,010만 파운드이며, 전년동기 보다 8억 3,290만 파운드 증가함.

○ 1/4분기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는 영국의 경기회복세¹⁷⁾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함.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2008년 보다는 낮은 수준임.¹⁸⁾

■ 2013년 1/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17억 5,04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분할납 보험료 규모는 각 연도 1/4분기를 비교할 경우 2001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임.

■ 2013년 1/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116억 8,970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각 연도별 1/4분기를 비교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89억 6,200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함.

15)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6)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17)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1/4분기에는 전 분기대비 0.3%를 기록함.

18) 2006년 1/4분기 161억 5,530만 파운드, 2007년 1/4분기 203억 1,220만 파운드, 2008년 1/4분기 181억 6,700만 파운드.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2	5.9	6.7	6.6	26.3	4.7
	증가율	- 20.4	- 35.4	- 29.1	- 12.3	- 24.9	- 35.1
	구성비	0.5	0.4	0.6	0.4	0.5	0.3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910.5	914.6	801.9	1,152.4	3,779.4	1,157.9
	증가율	2.8	- 8.8	0.2	47.4	8.9	27.2
	구성비	67.2	66.8	66.3	72.2	68.4	66.1
퇴직연금	보험료	160.0	168.5	131.5	153.6	613.6	335.9
	증가율	- 38.2	- 55.8	- 14.8	- 20.3	- 37.9	110.0
	구성비	11.8	12.3	10.9	9.6	11.1	19.2
역외영업	보험료	4.4	3.8	5.8	4.1	18.1	4.1
	증가율	- 59.7	- 56.0	- 18.4	- 21.9	- 43.2	- 6.8
	구성비	0.3	0.3	0.5	0.3	0.3	0.2
보장성보험	보험료	271.9	276.7	263.5	278.8	1,090.8	247.8
	증가율	5.5	4.2	4.0	15.6	7.2	- 8.8
	구성비	20.1	20.2	21.8	17.5	19.7	14.2
합계	보험료	1,354.0	1,369.5	1,209.3	1,595.4	5,528.3	1,750.4
	증가율	- 4.8	- 17.9	- 1.2	29.9	- 0.3	2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992.2	2,053.4	1,935.6	2,122.5	8,103.7	1,257.0
	증가율	- 21.1	- 12.0	- 6.5	3.7	- 9.7	- 36.9
	구성비	17.7	17.8	18.5	16.4	17.6	10.8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688.7	4,756.1	3,503.5	3,803.2	15,751.4	3,805.4
	증가율	- 7.4	- 5.5	- 7.5	17.2	- 1.8	3.2
	구성비	32.8	41.3	33.6	29.4	34.1	32.6
퇴직연금	보험료	4,376.9	3,551.8	3,765.3	5,656.5	17,350.5	5,600.9
	증가율	42.5	4.5	65.8	- 11.7	14.6	28.0
	구성비	38.9	30.8	36.1	43.7	37.6	47.9
역외영업	보험료	1,142.2	1,102.8	1,182.4	1,299.2	4,726.7	977.5
	증가율	- 26.5	- 26.4	- 28.9	7.2	- 20.2	- 14.4
	구성비	10.1	9.6	11.3	10.0	10.2	8.4
보장성보험	보험료	53.2	50.5	50.4	49.9	204.0	48.9
	증가율	- 1.2	- 7.0	- 1.7	- 10.7	- 5.3	- 8.2
	구성비	0.5	0.4	0.5	0.4	0.4	0.4
합계	보험료	11,253.2	11,514.6	10,437.1	12,931.4	46,136.3	11,689.7
	증가율	0.6	- 6.5	6.1	- 0.2	- 0.4	3.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3년 1/4분기 분할납 기준 투자·저축 보험료는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5.1% 감소함.

- 분할납 투자·저축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사혼합저축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54만 파운드 감소함.

■ 반면,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투자·저축 보험료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과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6.9% 감소함.

- 변액연동채권은 전년동기대비 525만 파운드 감소하였고, 유배당채권은 전년동기대비 207만 파운드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3년 1/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기준 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억 4,740만 파운드 증가함.
-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5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억 9,290만 파운드 증가하면서 판매 호조세가 지속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역시 단체개인연금계좌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38억 540만 파운드를 기록함.

-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억 9,80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억 1,470만 파운드 늘어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3년 1/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DC형 퇴직연금 및 맞춤형퇴직연금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10.0% 증가한 3억 3,590만 파운드를 기록함.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5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나,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억 900만 파운드 증가함.
-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7,940만 파운드 증가함.

■ 반면,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1/4분기 영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약 56억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2억 2,400만 파운드 증가함.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억 7,7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260만 파운드 증가함.
-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ulk Buyouts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억 5,940만 파운드 증가함.
- 경기불황기에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5억 8,430만 파운드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3년 1/4분기 역외영업 보험료는 분할납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하여 8분기 연속 축소됨.

- 전체 분할납 보험에서 1% 미만을 차지하는 역외영업보험은 모든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0만 파운드 감소함.

■ 2013년 1/4분기 일시납 기준 역외영업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한 9억 7,750만 파운드를 기록함.

-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 6,470만 파운드 감소함.
- 투자채권(investment bonds)과 기타 일시납 역외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7,900만

파운드, 4,040만 파운드 증가한 반면, 개인채권(personal bonds)은 전년동기대비 2억 2,380만 파운드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전체 분할납 보험료의 14.2%를 차지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2억 4,780만 파운드를 기록함.

-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410만 파운드 감소함.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840만 파운드, 50만 파운드 감소함.
- 반면 단체보장성보험¹⁹⁾은 전년동기대비 810만 파운드 증가함.

■ 전체 일시납 보험료에서 0.4%를 차지하는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전년동기대비 약 620만 파운드 감소함.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3년 1/4분기 분할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 62.1%, 제한적 자문 26.6%, 無 자문 18.1%를 기록함.

- 독립 자문 모집은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73.2%, 88.9%, 69.2%를 기록함.
- 제한적 자문 모집은 어느 보험 종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
 - 제한적 자문 모집은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보장성보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無 자문 모집 비중이 가장 컸던 보험 종목은 투자·저축 보험, 퇴직연금으로 나타남.
 - 투자·저축 보험, 퇴직연금의 無 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77.8%, 46.7%를 기록함.

19)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

〈표 8〉 2013년 1/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²⁰⁾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¹⁾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²⁾ (restricted advice)		無 자문 ³⁾ (non-advised)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9.2	77.6	3.0	18.6	77.8	3.6
퇴직연금계좌	73.2	82.7	16.2	10.3	10.6	7.0
퇴직연금	19.2	45.8	34.1	7.8	46.7	46.4
역외영업	88.9	63.5	1.2	24.7	9.9	11.8
보장성보험	69.2	78.2	20.5	21.6	12.9	0.2
전체	62.1	62.8	26.6	10.7	18.1	26.0

주: 1)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2) 단일 전속 또는 다중 전속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3)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일시납 기준의 경우 2013년 1/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이 62.8%, 제한적 자문이 10.7%, 無 자문이 26.0%를 기록함.

○ 퇴직연금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독립 자문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의 독립 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77.6%, 82.7%, 63.5%, 78.2%를 기록함.

○ 제한적 자문 모집은 어느 종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

- 제한적 자문 모집은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함.

○ 퇴직연금에서는 無 자문 모집 비중이 46.4%를 기록하면서 다른 모집 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시행으로 보험 판매채널 분류 기준이 2013년 1/4분기부터 변경됨. RDR은 자문자가 상품공급자의 판매전략이나 소비자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고 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함.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분할납 및 일시납 보험료는 2013년 1/4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되었음.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 종목에 걸친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370만 파운드 감소한 4,63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투자·저축보험, 역외영업, 퇴직연금계좌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억 4,500만 파운드 감소한 4억 2,500만 파운드를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 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일본 동향²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2.5% 증가한 24조 4,157억 엔을 기록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금액	677,673	167,733	178,254	182,502	203,557	732,046
	증가율	3.6	8.4	2.4	2.0	19.8	8.0
	구성비	86.1	84.6	89.7	88.3	83.4	86.3
사망	금액	556,910	137,851	149,663	153,505	172,901	613,920
	증가율	4.5	9.1	3.2	5.0	24.0	10.2
	구성비	70.7	69.5	75.3	74.3	70.8	72.4
생사 혼합	금액	114,136	28,775	27,536	27,837	28,965	113,112
	증가율	-1.3	6.3	0.5	-9.9	0.7	-0.9
	구성비	14.5	14.5	13.9	13.5	11.9	13.3
생존	금액	6,628	1,107	1,055	1,159	1,692	5,014
	증가율	26.7	-21.9	-37.1	-38.2	2.0	-24.3
	구성비	0.8	0.6	0.5	0.6	0.7	0.6
개인연금	금액	79,558	18,472	17,790	20,128	29,116	85,507
	증가율	14.0	12.0	-4.4	-23.0	58.9	7.5
	구성비	10.1	9.3	8.9	9.7	11.9	10.1
단체보험	금액	30,214	12,158	2,745	4,029	11,484	30,415
	증가율	21.7	15.1	-32.4	-11.1	3.9	0.7
	구성비	3.8	6.1	1.4	1.9	4.7	3.6
합계	금액	787,445	198,363	198,789	206,659	244,157	847,968
	증가율	5.2	9.1	1.0	-1.4	22.5	7.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2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20조 3,557억 엔을 시현함.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42.2%, 39.4% 증가하여 사망보험, 개인보험의 성장세를 견인하였음.
 - 반면에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3%, 2.5% 감소하였음.
-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은 정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8.9% 증가한 2조 9,116억 엔을 기록함.
 - 정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8.9%, 58.3% 증가하였음.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²²⁾ 포함)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1조 1,484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하였고, 반면에 단체신용생명보험은 87.2% 감소하였음.

〈자산 현황〉

- FY2012 4/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344조 9,981억 엔이며, 총자산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278조 2,449억 엔을 기록하였음.
-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국공채의 비중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주식 및 외화증권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국공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총자산 내 비중이 0.6%p 낮아졌음.
 - 주식 및 외화증권의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20.1%, 4.8% 증가하였고, 총자산 내 비중 역시 각각 0.7%p, 0.3%p 상승하였음.

22)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이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 유가증권 외 자산 규모는 대부분 전분기보다 증가하였음.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의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11.0%, 70.9%, 4.8% 증가하였음.

- 한편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0.6% 감소하였음.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5,155	-1.0	33,354	-5.1	32,947	-1.2	32,220	-2.2	35,749	11.0
단기자금	25,093	-2.0	24,137	-3.8	22,301	-7.6	16,187	-27.4	27,669	70.9
매입금전채권	28,894	-7.4	28,890	-0.01	28,826	-0.2	30,386	5.4	30,254	-0.4
금전신탁	20,144	2.1	19,658	-2.4	20,683	5.2	19,653	-5.0	20,599	4.8
유가증권	2,575,603	3.0	2,567,069	-0.3	2,608,694	1.6	2,694,451	3.3	2,782,449	3.3
- 국채 ²⁾	1,412,757	1.4	1,425,411	0.9	1,450,710	1.8	1,461,980	0.8	1,487,692	1.8
- 지방채	131,630	1.9	134,369	2.1	137,419	2.3	140,029	1.9	139,347	-0.5
- 회사채	253,429	0.7	253,288	-0.1	253,280	0.0	252,964	-0.1	251,552	-0.6
- 주식	147,444	9.5	129,284	-12.3	128,889	-0.3	139,223	8.0	167,257	20.1
- 외화증권	469,237	6.4	472,095	0.6	484,124	2.5	534,412	10.4	559,865	4.8
대출금	421,739	-0.8	412,639	-2.2	411,606	-0.3	404,985	-1.6	402,446	-0.6
부동산	65,139	-0.7	64,597	-0.8	64,307	-0.4	64,538	0.4	63,748	-1.2
운용자산 ³⁾	3,196,765	2.5	3,176,195	-0.6	3,214,337	1.2	3,286,246	2.2	3,390,880	3.2
비운용자산	72,760	0.8	72,894	0.2	73,291	0.5	66,289	-9.6	63,748	2.9
총자산 ⁴⁾	3,269,525	2.4	3,249,089	-0.6	3,287,628	1.2	3,352,535	2.0	3,449,981	2.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FY2012 4/4분기 말 국공채(국채+지방채)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162조 7,039억 엔임.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2조 331억 엔을 기록함.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²⁾	13,773	3,425	3,352	3,795	3,562	14,134
	증가율 ³⁾	4.7	1.2	3.6	5.0	0.6	2.6
	구성비	17.2	16.2	16.8	18.6	17.5	17.2
해상	보험료	1,949	512	472	475	520	1,979
	증가율	-0.8	-1.7	-1.9	1.3	8.8	1.5
	구성비	2.4	2.4	2.4	2.3	2.6	2.4
운송	보험료	622	171	150	155	156	632
	증가율	2.3	3.0	1.4	0.6	1.3	1.6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34,761	9,122	8,780	9,039	8,987	35,927
	증가율	1.3	3.5	3.9	3.0	3.0	3.4
	구성비	43.5	43.1	44.0	44.2	44.2	43.5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8,917	2,410	2,231	2,214	2,453	9,308
	증가율	10.6	8.5	0.9	-0.1	8.2	4.4
	구성비	11.2	11.4	11.2	10.8	12.1	11.2
상해	보험료	10,677	2,882	2,629	2,497	2,288	10,295
	증가율	2.6	-0.4	-4.3	-4.9	-5.0	-3.6
	구성비	13.4	13.6	13.2	12.2	11.3	13.4
특종	보험료	9,223	2,650	2,361	2,270	2,366	9,648
	증가율	2.9	4.4	3.1	5.2	5.8	4.6
	구성비	11.5	12.5	11.8	11.1	11.6	11.5
합계	보험료	79,923	21,171	19,975	20,445	20,331	81,923
	증가율	3.2	3.1	2.1	2.2	2.6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일반화재보험이 3.7%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3,562억 엔을 기록함.
 - 지진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화재보험의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지진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520억 엔을 기록함.
 -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해상보험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8,987억 엔을,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453억 엔을 기록함.
 - 전분기와 동일하게 회사별 상품 및 요율 개정 등의 영향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2,288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2,366억 엔을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0% 증가한 배상책임보험과 비용·이익보험²³⁾의 영향으로 특종보험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자산 현황〉

- FY2012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유가증권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5% 증가한 28조 4,598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34.4% 증가한 9,288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19.2% 증기한 4,278억 엔을 기록함.
 - 반면 대출금과 부동산은 전분기 대비 각각 1.9%,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46.4% 증가한 4,289억 엔을 기록하였고,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34.6% 감소한 2,832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와 주식은 전분기대비 각각 0.2%, 15.2%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회사채 및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3.9%, 1.0%, 0.8% 감소하였음.

23) 산업화 이후 기업활동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상실, 혹은 영업유지를 위한 상실이익이나 그 비용을 담보로 하는 보험임. 우리나라의 기계보험, 기업휴식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과 유사함.

-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국공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성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146	0.3	7,494	-18.1	7,634	1.9	6,909	-9.5	9,288	34.4
단기자금		3,801	41.2	3,573	-6.0	5,104	42.8	3,590	-29.7	4,278	19.2
환매조건부채권		4,071	9.1	4,159	2.2	2,904	-30.2	2,930	0.9	4,289	46.4
매입금전채권		6,741	-9.3	6,221	-7.7	4,143	-33.4	4,331	4.5	2,832	-34.6
금전신탁		581	-11.7	541	-6.9	586	8.3	555	-5.3	914	64.7
유가증권	국채 ²⁾	57,769	5.4	58,121	0.6	59,765	2.8	61,837	3.5	61,961	0.2
	지방채	3,924	-12.0	3,852	-1.8	3,773	-2.1	3,634	-3.7	3,493	-3.9
	회사채	29,200	-2.2	28,725	-1.6	27,871	-3.0	26,984	-3.2	26,708	-1.0
	주식	57,242	12.5	51,275	-10.4	48,049	-6.3	55,109	14.7	63,484	15.2
	외화증권	43,235	-1.8	45,757	5.8	45,554	-0.4	47,918	5.2	47,534	-0.8
	기타증권	2,981	3.3	2,846	-4.5	2,636	-7.4	2,728	3.5	2,725	-0.1
	소계	194,350	4.0	190,576	-1.9	187,649	-1.5	198,210	5.6	205,905	3.9
대출금		19,219	-2.8	18,986	-1.2	18,278	-3.7	17,929	-1.9	17,589	-1.9
부동산		10,749	2.5	10,693	-0.5	10,555	-1.3	10,461	-0.9	10,429	-0.3
운용자산		248,658	3.3	242,343	-2.5	236,854	-2.3	244,915	3.4	255,526	4.3
비운용자산 ³⁾		31,300	0.9	31,005	-0.9	31,962	3.1	30,144	-5.7	29,071	-3.6
총자산		279,958	3.0	273,348	-2.4	268,817	-1.7	275,060	2.3	284,598	3.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FY2012 4/4분기 말 국공채(국채+지방채)는 전분기 대비 0.03% 감소한 6조 5,454억 엔임.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서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²⁴⁾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3년 1/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5,15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함.

- 손해보험과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상승하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7.0% 증가한 1,488억 위안, 사업비는 16.9% 증가한 546억 위안을 기록함.

- 생명보험 급부금 만기 도래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증가로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24)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14,339	4,835	3,698	3,544	3,412	15,488
	증가율 ³⁾	-1.3	4.7	7.5	10.9	10.6	8.0
인보험	금액	9,721	3,534	2,299	2,251	2,073	10,157
	증가율 ³⁾	-8.6	1.4	3.9	8.1	6.7	4.5
손해보험	금액	4,618	1,301	1,399	1,292	1,339	5,331
	증가율 ³⁾	18.5	14.8	14.0	15.9	17.1	15.4
지급보험금	금액	3,929	1,172	1,091	1,130	1,324	4,716
	증가율 ³⁾	22.8	19.5	11.4	23.6	25.4	20.2
인보험	금액	1,742	599	444	400	457	1,900
	증가율 ³⁾	20.7	8.8	-5.7	10.5	27.7	9.1
손해보험	금액	2,187	573	647	730	866	2,816
	증가율 ³⁾	24.5	33.5	27.4	32.2	24.1	28.8
사업비	금액	1,882	467	505	536	664	2,171
	증가율 ³⁾	22.4	21.2	15.6	15.0	11.8	15.4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3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4.3% 증가한 7조 6,686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7조 868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16.3% 증가한 5,819억 위안을 기록함.

■ 운용자산 중 예치금 및 투자금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비중은 소폭 축소됨.

- 예치금은 2조 3,99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6%p 감소한 31.3%를 기록함.
- 투자금은 4조 6,87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1.3%에서 61.1%로 감소함.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운용자산계	금액	55,474	58,882	61,804	63,784	68,543	68,543	70,868
	증가율 ³⁾	20.5	6.1	5.0	3.2	7.5	23.6	3.4
	구성비	92.2	92.5	91.2	92.4	93.2	92.2	92.4
예치금	금액	17,737	20,698	22,578	21,979	23,446	23,446	23,992
	증가율 ³⁾	27.5	16.7	9.1	-2.7	6.7	32.2	2.3
	구성비	29.5	32.5	33.3	31.9	31.9	31.9	31.3
투자금	금액	37,737	38,183	39,226	41,805	45,097	45,097	46,875
	증가율 ³⁾	17.4	1.2	2.7	6.6	7.9	19.5	3.9
	구성비	62.8	60.0	57.9	60.6	61.3	61.3	61.1
비운용자산 ⁴⁾ 계	금액	4,664	4,796	5,956	5,215	5,003	5,003	5,819
	증가율 ³⁾	5.2	2.8	24.2	-12.4	-4.1	7.3	16.3
	구성비	7.8	7.5	8.8	7.6	6.8	6.8	7.6
총자산	금액	60,138	63,679	67,760	68,999	73,546	73,546	76,686
	증가율 ³⁾	19.1	5.9	6.4	1.8	6.6	22.3	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이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638억 위안²⁵⁾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고성장세가 지속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모두 개선되었으나,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3,224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한 295억 위안,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한 119억 위안을 기록함.

■ 2013년 1/4분기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함.

- 176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2.5%를 기록하였으며, AXA-Minmetals 및 Met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²⁶⁾ 수익률은 각각 0.1%와 2.0%를 기록함.

25)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26)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XA-Minmetals 및 Met life 2개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9,721	3,534	2,299	2,251	2,073	10,157	3,638
	증가율 ⁴⁾	-8.6	1.4	3.9	8.1	6.7	4.5	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생명보험	보험료	8,696	3,203	1,962	1,945	1,799	8,908	3,224
	증가율 ⁴⁾	-10.2	-0.2	1.0	6.3	5.0	2.4	0.7
	구성비	89.4	90.6	85.3	86.4	86.8	87.7	88.6
- 건강보험	보험료	692	229	237	204	193	863	295
	증가율 ⁴⁾	2.2	22.4	30.9	23.6	21.4	24.7	28.9
	구성비	7.1	6.5	10.3	9.1	9.3	8.5	8.1
- 상해보험	보험료	334	103	99	103	82	386	119
	증가율 ⁴⁾	21.5	17.9	11.2	17.0	17.1	15.6	16.0
	구성비	3.4	2.9	4.3	4.6	4.0	3.8	3.3

주: 1) 기간별 실적지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75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증가세는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644억 위안, 89억 위안 및 2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8%, 22.0%, 11.4% 증가함.

○ 생명보험 급부금 만기 도래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증가로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에 판매된 10년 만기 생명보험과 2008년에 판매된 5년 만기 생명보험의 급부금은 약 500억 위안임.

- 중국 생명보험시장 상위 4개사²⁷⁾의 해약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78.6% 증가한 343억 위안을 기록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1,742	599	444	400	457	1,900	758
	증가율 ⁴⁾	20.7	8.8	-5.7	10.5	27.7	9.1	26.5
- 생명보험	보험금	1,301	503	353	297	351	1,505	644
	증가율 ⁴⁾	17.3	15.3	6.3	12.9	30.5	15.7	27.8
- 건강보험	보험금	360	73	69	77	79	298	89
	증가율 ⁴⁾	36.2	-24.0	-42.5	-1.3	19.7	-17.2	22.0
- 상해보험	보험금	82	22	21	26	27	97	25
	증가율 ⁴⁾	15.3	24.7	10.5	23.8	12.5	18.3	11.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한데 반해,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5.8%로 전분기에 비해 2.5%p 상승하였으며,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5%p 하락한 4.2%를 기록함.

-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Generali China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²⁸⁾의 시장점유율은 70.1%로 전분기에 비해 2.3%p 상승함.

27) 생명보험시장 상위 4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평안생명보험, 타이핑양생명보험, 신화생명보험으로 이들의 해약환급금은 각각 201억 위안, 17억 위안, 52억 위안, 73억 위안임.

28)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생명보험, 평안생명보험, 신화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1.4%, 8.6%, 15.6%, 8.9%, 5.7%임.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3)}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2.8	72.9	71.5	70.2	67.8	71.0
		중소형사 ²⁾	23.2	23.8	23.9	24.2	25.5	24.3
		소계	96.0	96.7	95.3	94.5	93.3	95.2
	외자계		4.0	3.3	4.7	5.5	6.7	4.8
								4.2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51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음.

○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54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였음.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 4)}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²⁾	4,618	1,301	1,399	1,292	1,339	5,331
	증가율 ³⁾	18.5	14.8	14.0	15.9	17.1	15.4
							16.3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730억 위안을 기록함.

-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 및 자동차 판매량 급증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의 원인인 것으로 보임.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³⁾	2,187	573	647	730	866	2,816
	증가율 ⁴⁾	24.5	33.5	27.4	32.2	24.1	28.8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한데 반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상승한 98.9%를 기록하였으며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1%p 하락한 1.1%에 그침.
-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인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4.9%, 17.1%, 13.1%의 시장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에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0%p 상승함.
-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AIG, Liberty Mutual, Allianz China로 나타남.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3)}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6.6	66.7	65.2	65.4	64.1	65.3
		중소형사 ²⁾	32.3	32.1	33.6	33.3	34.7	33.4
		소계	98.9	98.8	98.8	98.8	98.8	98.8
	외자계		1.1	1.2	1.2	1.2	1.2	1.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⁹⁾

■ 2013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2% 하락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180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8.5% 늘어남.

○ 2013년 1/4분기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기업연금 신규가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됨.

- 2013년 1/4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 8%를 밑도는 7.7%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중국의 전체 기업 수가 1,375만³⁰⁾을 기록하였으나 기업연금 가입 기업 수가 5만 7천여 개를 기록함.

29)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5개가 있는데 태평, 평안, 인수, 창장, 태강 등임.

30) 전국 기업 수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통계수치임.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²⁾	금액	109	410	207	167	127	160	662	167
	증가율 ²⁾	-19.3	14.8	22.0	271.1	46.0	46.8	61.5	-19.2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378	1,378	1,561	1,723	1,842	2,009	2,009	2,180
	증가율 ³⁾	8.9	32.6	13.3	10.3	6.9	9.1	45.8	8.5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여름호 (통권 2호)

발행일	2013년 9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국제보험금융센터(☎3775-907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